

연구보고서

2023

12

공적연금 개혁기 사적연금의 활성화 방안

정원석·강성호·이소양·전예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목 차

• 요약	1
I. 서론	2
1. 연구배경 및 목적	2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II. 사적연금 현황과 문제점	8
1. 사적연금 현황	8
2. 사적연금의 문제점	10
3. 소결	19
III. 해외사례	20
1. 스웨덴	20
2. 호주	37
3. 소결	59
IV. 사적연금의 역할	61
1. 분석가정 및 분석방법	61
2. 분석결과: 소득대체율 추정	64
3. 소결	72
V. 개선방안	73
1. 적립금 중도 인출 조건 강화	73
2. 이직 시 해지 금지	74
3. 환금형 세제공제 적용	74
4. 퇴직연금 사업자 역할 강화	75
5. 최저보증 상품 활용	77
VI. 결론	83
• 참고문헌	85

표 차례

〈표 I-1〉 연금개혁 방안: 모수개혁 vs. 구조개혁	4
〈표 II-1〉 IRP 이전금액 중 해지금액 및 해지율	11
〈표 II-2〉 IRP 해지 인원 및 금액	12
〈표 II-3〉 근로자 소득수준별 연금계좌 가입률 및 가입자 평균 납입액 변화 추이	13
〈표 II-4〉 연도별 연금계좌 납입자 중 소득계층별 과세 미달자 비율	13
〈표 II-5〉 제도 유형별 운용방식별 기간별 수익률 현황	14
〈표 II-6〉 연금저축 업권별 수익률 현황	17
〈표 II-7〉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18
〈표 III-1〉 스웨덴 경제 상황의 변화	23
〈표 III-2〉 스웨덴 개혁이전 연금 2030년 비용을 시나리오	23
〈표 III-3〉 제도 변천 과정	24
〈표 III-4〉 스웨덴 공적연금시스템	25
〈표 III-5〉 1998년 연금개혁 전후 주요 내용 비교	30
〈표 III-6〉 스웨덴 공적연금 유형별 수급자 및 지급액(2021~2022년)	31
〈표 III-7〉 사적연금 수익률에 따른 기대소득대체율	32
〈표 III-8〉 AP 기금 현황(2021년)	33
〈표 III-9〉 프리미엄연금 자산운용 현황	34
〈표 III-10〉 AP7 프로그램별 자산구성(2021년)	34
〈표 III-11〉 AP7 및 민간펀드 수익률 추이	35
〈표 III-12〉 스웨덴 GDP 대비 공적연금 급여 지출 비율 현황 및 전망	35
〈표 III-13〉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용 추계(2019년)	36
〈표 III-14〉 공적연금 소득대체율(2019년)	36
〈표 III-15〉 스웨덴 연금수급자의 빈곤율	37
〈표 III-16〉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37
〈표 III-17〉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기여율 변화	39
〈표 III-18〉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기금 유형	40
〈표 III-19〉 은퇴 연령 및 최저 인출 비율	41
〈표 III-20〉 중도 인출 조건	41
〈표 III-21〉 공동기여제도 적용 조건, 지급비율 및 예시	42
〈표 III-22〉 세액환급제도 적용 조건 및 예시	43

〈표 III-23〉 MySuper 상품 시장의 변화 추이	47
〈표 III-24〉 연령별·성별 MySuper 상품 투자 현황(2021년 6월)	48
〈표 III-25〉 MySuper 운영성과 변화 추이	49
〈표 III-26〉 MySuper 상품 수수료 변화	49
〈표 III-27〉 호주 퇴직연금 기여금 납부, 자산운용, 적립금 인출 시의 과세방식	51
〈표 III-28〉 호주 퇴직연금 계좌 보유 수별 가입자 수 및 계좌 수 변화 추이 (2020년)	52
〈표 III-29〉 호주 APRA의 감독을 받는 퇴직연금 기금의 유형별 투자수익률 변화 추이	54
〈표 III-30〉 퇴직연금 운영성과 변화 추이	56
〈표 III-31〉 2022년 글로벌 연금 지수(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57
〈표 IV-1〉 제도 및 경제변수 가정	63
〈표 IV-2〉 5개 소득계층 구분	64
〈표 IV-3〉 40년 가입 시 기초·국민·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65
〈표 IV-4〉 25년 가입 시 기초·국민·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67
〈표 IV-5〉 연금계좌의 소득대체율	68
〈표 IV-6〉 DC형 퇴직연금과 연금계좌 투자수익률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 변화	70
〈표 IV-7〉 보험료율(적립률)과 자산운용수익률에 따른 퇴직 및 연금계좌 소득대체율	71
〈표 IV-8〉 평균소득, 25년 가입자의 총 노후소득대체율	72
〈표 V-1〉 연금저축 상품 유형별 비용 구조	80
〈표 V-2〉 연금저축 상품 유형별 비용 비교	81

그림 차례

〈그림 II-1〉 제도별 기간별(5년, 10년) 연평균 수익률	15
〈그림 II-2〉 제도별 적립금 운용 현황	16
〈그림 II-3〉 투자상품별 기간별(5년, 10년) 연평균 수익률	17
〈그림 III-1〉 스웨덴 노후소득보장체계	21
〈그림 III-2〉 스웨덴 최저보증연금 연금지급 구조	26
〈그림 III-3〉 호주의 소득세율과 저율과세	43
〈그림 III-4〉 MySuper 상품 공시 사례(2022년)	45
〈그림 III-5〉 MySuper 상품의 히트맵	46
〈그림 III-6〉 호주 퇴직연금 기금 총자산 및 성장율 추이	52
〈그림 III-7〉 호주 퇴직연금 기금 유형별 적립금 변화 추이	53
〈그림 III-8〉 호주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배분 비중(2021년)	55
〈그림 III-9〉 호주 연령대별 빈곤율	56
〈그림 III-10〉 호주 정부의 노후소득 관련 재정지출 추계	58
〈그림 V-1〉 퇴직연금 자산운용 순서도	76
〈그림 V-2〉 연금저축 상품 유형별 비용 비교	81

A Complementary Usage to Private Pensions in a Time of Public Pension Reform

There are discussions on public pension reforms to improve the sustainability. Therefore, public pension reforms will be carried out to pay more and receive less.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make up for the shortfall in retirement income. This report examines the case of Sweden, which experienced a public pension fiscal crisis and achieved a sustainable pension system and retirement income guarantee rate through reforms. The case of Australia, known as a successful case in introducing retirement pensions. The problem of Korea's private pension system is that, for retirement pensions, insufficient funds are accumulated due to early withdrawals and termination when changing jobs, and asset management returns are meager. For this reason, retirement pension members often receive their pension savings as a lump sum rather than an annuity when they retire. Pension accounts (Tax-preferred pension savings+IRP), in which members voluntarily contribute pension assets, also suffer from low contribution rates and contribution levels among low-income groups and low investment returns. In Sweden and Australia, we found that withdrawing private pensions fund is more difficult than in Korea. In addition, for low-income people, Australia provides subsidies and tax benefits to low-income people who pay into private pensions. In terms of managing returns, Sweden has a government-run private pension fund, while Australia has encouraged private competition to improve returns. We analyze that Korea could achieve the OECD average of 60 percent income replacement rate in retirement based on 40 years of membership by preventing early withdrawals, maintaining contributions to pension and annuity accounts at 12 percent of annual income, and achieving a 3 percent return on asset management.

요약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개혁의 목적이 재정안정에 맞춰 있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기초연금이 공적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일부 개선할 것으로 이해되나 충분한 노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필연적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개선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달성한 스웨덴의 사례와 퇴직연금의 성공사례로 알려진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고, 퇴직연금과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노후소득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문제점 때문에 중도 인출 및 이직 시 해지 등으로 적립금이 누수되고, 추가적으로 노후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연금계좌는 세제혜택 외에 별다른 유인 요소를 갖고 있지 못하며, 자산운용 과정에서 수익률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퇴직 시점까지 적립금은 충분히 쌓이지 못하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문제를 해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웨덴 및 호주의 사례를 살펴본다. 두 국가 모두 사적연금의 중도인출 및 해지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저소득층에 대해 최저보증연금을 제공하거나,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강하게 지원하는 등 재원의 누수를 막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적연금 펀드를 정부, 민간에서 경쟁하게 하거나(스웨덴), 적극적 시장경쟁을 유도하여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으로(호주) 평가된다. 우리나라도 중도 인출을 막고 퇴직연금 및 연금계좌 납입은 연소득의 12% 수준을 유지하고, 자산운용 수익률 3% 수준을 달성하면 40년 가입기준으로 은퇴 시 OECD 평균 소득대체율 수준인 6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조건을 강화하고 이직 시 해지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환급형 세액공제) 지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 간의 수익률 비교 및 공시 등을 통해 사업자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 등에서 실적배당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저보증옵션 허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래 크게 성장하여 국민 노후소득보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역할은 중산층 이상의 경우 근로기의 생활 수준을 은퇴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위한 것이다. 근로기에 저소득층인 경우도 은퇴 이후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득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이루기 위해 초기 국민연금은 평균적인 소득대체율 70%를 목표로 시작하였으나, 기여금 대비 높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후 두 차례(1998년, 2007년)의 개혁을 거쳐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 수준을 목표로 조정 중이다.

소득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 기능은 연금 기여가 적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연금을 고소득층에 비해 더 많이 지급하는 기능이다. 근로기 저소득층 가입자와 고소득층 가입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 대비 동일한 비율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 저소득층이 수령하는 연금액은 노후 생활비에 크게 부족한 상황이 된다. 따라서,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령하는 연금(수익비)을 소득계층별로 달리하여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저소득계층이 수령하는 연금의 비율은 납입액의 4배(수익비 4) 수준이며, 최고소득계층의 경우 납입액 대비 1.7배 수준의 연금을 수령한다.¹⁾

이처럼 모든 소득계층의 가입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므로 이후 세대가 충분한 연금보험료를 납입해 주지 못한다면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실제로 경제성장률과 출산율이 높고 기대수명이 지금처럼 길지 않았던 1980년대 기준에

1) 최기홍·한정림(2017)

서 설계되었던 국민연금은 이후 경제성장을 둔화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지출되는 보험금 대비 납입 보험료가 적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3년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는 현재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감소)이 유지될 경우 32년 후인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2018년 발표되었던 4차 재정계산에서 39년 후인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 결과에 비해 기금 고갈까지 남은 시간이 7년이나 줄어든 수치이다. 그리고 해당 추계에서는 기금이 고갈된 이후 현재 연금 지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 세대가 소득의 30%를 노인세대의 연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로 납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근로 세대의 반발로 제도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무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은 제도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 국민연금의 재무적 지속가능성 제고는 국민연금 개혁이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얻는 연금액이 감소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기에 국민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위한 사적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가. 공적연금 개혁

공적연금 개혁 관련 연구들은 크게 모수개혁(안), 구조개혁(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급여수준, 연금수급개시연령 등의 모수(Parameters) 조정을 통해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납입 및 지급방식 등 전체 구조를 변경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두 개혁안 모두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조개혁은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일부 변수만 고려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모수개혁에 비해 보다 근본적 개혁방향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구조개혁은 매우 이상적 개혁

에 가까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개혁을 이룰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논리적으로는 구조개혁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연금개혁은 모수개혁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모수개혁과 구조개혁도 유일한 방안이 아니라 구체적 설계 방향에 따라 개혁안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특징을 정리하고 연금개혁 관련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난 다양한 방안을 보여준다(〈표 I-1〉 참조).

〈표 I-1〉 연금개혁 방안: 모수개혁 vs. 구조개혁

구분	모수개혁	구조개혁
개혁대상	• 공적연금 중심	• 사적연금 등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고려
개혁기간	• 단기적	• 장기적
제도 변수	• 보험료, 급여율 조정	• 보험료, 급여율 조정을 포함하여 다른 제도 간 관계를 고려
사례	• 대부분의 국가	• 북유럽 국가(스웨덴, 핀란드 등)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함

구조개혁과 관련된 연구로 최병호·강성호(2019), 윤석명 외(2022), 오건호(2021) 등이 있다. 최병호·강성호(2019)는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제도로 일원화하고 9% 보험료율에 기초한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되 부족한 노후자산은 기초연금의 강화와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소득보장을 제고하자는 제안이다. 윤석명 외(2022)는 OECD에서 권고한 공적연금의 통합 운영을 고려하되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2015년 일본 사례를 고려하되 연금재정 통합이 아니라 제도 간 기준소득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모수개혁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용하(2015), 김원섭 외(2016), 성혜영 외(2020), 석재은(2018), 류재린 외(2022), 김상호(2021), 전영준(2020), 김윤영 외(2022), 최옥금(2021), 정해식 외(2020)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연구들의 특징은 국민연금, 직역연금, 기초연금 등 각 제도의 특성을 존중하되 재정적 문제를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삭감하거나 보험료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급여수준은 이미 40%로 삭감되어 매우 낮아졌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통한 노후소득보완을 고려하고 있다.

전영준(2020)은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에 대한 연금급여 삭감, 국민연금 보험료 상향, 직역연금 급여 삭감과 민간연금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다. 오건호(2021)는 기초연금을 최저보장연금으로 전환하여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와 급여 간의 수지균형을 통해 재정안정성을 제고하며,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류재린 외(2022)는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보충연금을 도입하는 방안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균등부분을 조정하는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김윤영 외(2022)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서 기초연금의 재구조화를 통한 빈곤 문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위 연금개혁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현행 공적연금의 수지균형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나 각 제도의 최초 도입과정에서 제도별 특성이 존재하여 문제점을 일시에 개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도개혁 과정을 모수적 혹은 구조적으로 개혁하자는 방안들이 제기되어 왔다. 근본적 측면에서 보면 구조적 개혁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조적 개혁 또한 인구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영원한 제도적 안정을 가져다줄 수는 없다.

기존 대부분의 연금개혁 논의는 국민연금, 직역연금, 기초연금과 같이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적연금이 개입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심층적으로 다루지도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개혁과 노후소득에 대한 논의를 사적연금으로 확장하였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연금개혁을 논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본다.

나. 사적연금 활성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과 앞으로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이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국민의 주된 직장에서의 평균 근로기간이 25년 수준이므로 1층의 국민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노후소득대체율은 25% 수준이다. 그리고 현재 사적연금인 2층의 퇴직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8.3~13.3% 안팎이므로(강성호, 2023),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2층의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류건식 외, 2017; 강성호 외, 2018). 이들 연구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소득활동자나 자발적 가입자들까지 포괄하여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원식 외(2016)는 사적연금 중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이 연금저축자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가 연금저축에 제공한 세제혜택은 소요된 재정지출의 1.36~8배의 연금저축 적립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연구는 사적연금에 대한 현재 시점의 재정지출이 미래 연금자산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지 데이터를 이용해 추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정원석·강성호(2015; 2017a)는 소득수준이 높은 가입자는 정부의 세제혜택 확대에 반응하여 연금저축 납입액을 증가시키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가입자는 세제혜택이 증가하더라도 저축 여력이 적기 때문에 연금저축 납입액을 증가시키지 못함을 ‘재정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였다.

세제혜택 방식변화가 사적연금 납입액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는 정원석·문성훈(2016), 정원석(2018a; 2018b)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2014년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뀐 이후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자와 이들의 납입액이 감소하였고, 그 이유로 세액공제 도입 이후 여러 가지 공제를 받고 나면 결정세액이 0원인 과세 미달자가 증가했다. 이들은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사적연금(연금저축) 납입 유인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을 유인하기 위해 보조금 혹은 결정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환급해 주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도로는 독일의 공적연금 개혁과 함께 등장한 리스터연금을 들 수 있다.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보조금 지급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정원석·강성호(2017b)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동 제도가 사적연금 가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독일과 유사하게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사적연금 납입액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도가 30년간 지속되었을 때 빈곤율이 최대 8.6%p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다. 차별성 및 구성

본 연구는 연금개혁과 그에 따른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적연금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이룬 스웨덴과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연금개혁 시기에 사적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해외사례를(스웨덴, 호주) 살펴보고 우리나라 연금개혁 및 사적연금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IV장에서는 사적연금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노후소득 규모와 조달 방안을 추정한다. V장에서는 우리나라 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 VI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사적연금 현황과 문제점

공적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된다면 사적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본인이 기여하고 적립된 만큼 수령하는 사적연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연금 중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 중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계좌(개인형 IRP+연금저축)를 중심으로 사적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1. 사적연금 현황

가. 퇴직연금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근로자 퇴직 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퇴직금제도는 퇴직연금 재원을 사내에 적립하여 사업체 도산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퇴직금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가입자가 이직 등을 위해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 퇴직금이 근로기간 동안 연속성을 가지고 적립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목돈으로 지급되어 은퇴 이후 충분한 퇴직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고령층이 스스로 자산을 운용하여 노후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 시 연소득의 8.3%를 근속연수만큼 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DC형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소득의 8.3% 이상을 매해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고 근로자는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퇴직 시 노후소득원으로 수령하게 된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 모두 적립금을 사업체의 계좌가 아닌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장하였다. 또한 퇴직 시 적립된 퇴직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옮겨져 은퇴 시까지 퇴직연금 적립금으

로써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세제혜택으로는 납입 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는 손금으로 인정되고 근로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운용기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 한다. 특히 은퇴 연령(55세) 이후 적립금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30~40%까지 경감하여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판단에 따라 IRP에 은퇴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2023년 현재 900만 원까지는 적립금의 12%를 세액공제 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퇴직연금 장려 정책에 힘입어 퇴직연금은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다.²⁾ 퇴직연금은 2021년 현재 42.5만여 사업장에 도입되어 27.1%의 도입률을 기록하고 있고, 총 가입자는 683.7만 명에 달해 전체 대상자의 53.3%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적립금액은 295조 원으로 매년 10%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가입률, 적립금 그리고 성장률 등을 볼 때 퇴직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개인연금

3층의 개인연금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납입 시 세제 혜택은 없지만 10년간 계약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연금은 「소득세법」에 의해 규율된다.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에 대해 1년에 6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³⁾ 적립된 자산이 운용되는 동안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과세하지 않은 소득세는 적립된 연금자산을 연금으로 수령 시 3~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그러나 가입 후 중도에 해지하거나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적립금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

연금저축은 2021년 기준으로 연금저축 계좌 보유자는 689만 명이며, 이중 218만 명이 보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제공해야 함. 다만 일부 예외를 두어 퇴직금으로도 퇴직급여 제공이 가능함

3) 「소득세법」 제59조의3 등

협료를 납부였으며 연금저축계좌에는 총 160.1조 원이 적립되어 있다.

연금저축과 유사한 제도로 개인형 IRP를 들 수 있다. 동 제도와 연금저축의 가장 큰 차이 점은 개인형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소득세법」에서 연금계좌로 통칭하며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에 동일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므로 개인은 이 둘을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형 IRP의 경우 2014년까지는 세제혜택 한도가 연금저축과 동일한 400만 원이었으나 2015년부터 개인형 IRP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이후 개인형 IRP 적립금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실례로 2020년 개인형 IRP 적립금은 34.4조 원이었으나 2021년 46.5조 원으로 1년 만에 12.1조 원,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다.

2. 사적연금의 문제점

퇴직연금과 연금계좌(개인형 IRP+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을 노후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사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퇴직연금과 연금계좌가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이다.

가. 중도 인출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는 중도 인출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되는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임대주택 마련, 본인 혹은 직계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요구하는 질병, 본인의 파산 및 개인회생 등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러한 예외적 이유로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 인출을 실행하는 가입자 숫자는 5.5만 명이고 금액은 1.9조 원에 달한다. 이중 주택 구입이 1조 2,659억 원으로 65.2%로 가장 많고, 주택 임차 명목으로 중도 인출된 금액은 4,555억으로 전체 중도 인출의 23.5%를 차지한다(통계청, 2022).

이러한 수치는 중도 인출 조건 중 요양이나 파산, 개인회생 등의 이유는 평생 여러 차례 일어나기 어렵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이후,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 한 뒤 다시 주택을 구입하면 생애 동안 몇 차례라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임대주택 마련 역시 동일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사실상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차례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나. 이직 시 해지

이직이나 퇴직 시 IRP로 입금된 적립금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이직 및 퇴직으로 적립금을 IRP로 이전한 가입자는 91.3만 명이고 그 금액은 17.6조 원에 달한다. 이중 IRP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11.7조 원에 달한다.

〈표 II-1〉 IRP 이전금액 중 해지금액 및 해지율

(단위: 조 원, %)

연도	이전금액	해지금액	해지율
2015	10.7	9.5	88.8
2017	11.5	10.1	87.9
2019	13.9	11.2	80.9
2021	17.6	11.7	66.3

자료: 통계청, 퇴직연금 통계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이를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금 개시가 가능한 55세 미만자가 IRP를 해지한 경우는 인원 기준으로 99%, 금액 기준으로는 98.4%에 이른다.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이직 시 IRP로 이전된 다음 상당 부분이 은퇴 이후까지 보존되지 못하고 누수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직하면서 퇴직급여를 인출 하지 않고, 은퇴 시까지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II-2〉 IRP 해지 인원 및 금액

(단위: 명, %, 백만 원)

구분	인원 기준		금액 기준	
	인원	비중	금액	비중
합계	865,116	100.0	11,688,801	100.0
20세 미만	650	0.1	1,792	0.0
20~25세 미만	39,791	4.6	195,009	1.7
25~30세 미만	160,424	18.5	1,072,794	9.2
30~35세 미만	162,442	18.8	1,689,722	14.5
35~40세 미만	138,333	16.0	2,041,375	17.5
40~45세 미만	128,030	14.8	2,162,160	18.5
45~50세 미만	117,295	13.6	2,133,067	18.2
50~55세 미만	111,821	12.9	2,210,627	18.9
55~60세 미만	6,033	0.7	158,892	1.4
60~65세 미만	227	0.0	18,308	0.2
65세 이상	70	0.0	5,054	0.0

자료: 통계청, 2021년 퇴직연금 통계

다. 추가(연금계좌) 적립 미흡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고려했을 때 매년 연소득의 8.3%씩 적립되는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올릴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 추가적인 연금자산을 적립해야 한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연금자산을 적립하는 방법은 연금계좌(개인형 IRP+연금저축)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900만 원까지 12%⁴⁾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또한 적립된 자산을 운용하는 동안에는 과세가 되지 않으며, 연금으로 수령 시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3~5%의 저율로 분리과세 한다. 이러한 세제상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 연금자산을 적립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14%, 납입자의 평균 납입액은 308만 원 수준으로 낮다.

이를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납입자의 비율과 평균 납입액이 높다. 반면, 소득이 낮아 저축 여력이 낮은 계층의 경우 연금계좌 납입자 비율과 평균 납입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5%임

〈표 II-3〉 근로자 소득수준별 연금계좌 가입률 및 가입자 평균 납입액 변화 추이

(단위: %, 만 원)

구분	전체		2,000 이하		2,000~4,000		4,000~6,000		6,000~8,000		8,000~10,000	
연도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2014	14.3	258.2	2.0	101.1	17.8	208.2	43.7	275.4	59.4	302.4	70.4	323.2
2015	14.1	271.0	1.7	69.6	16.3	195.7	42.7	271.5	58.6	316.7	70.0	363.7
2016	13.5	280.1	1.4	80.6	14.1	206.4	39.2	271.3	55.7	314.7	67.5	364.0
2017	13.9	279.1	1.5	74.5	13.6	198.5	37.7	268.4	54.5	321.0	66.3	369.8
2018	13.8	285.2	1.4	77.5	12.6	199.6	35.4	268.3	52.3	325.4	64.0	374.7
2019	13.8	289.4	1.5	79.6	12.1	199.7	33.9	270.6	50.8	329.6	62.3	381.6
2020	14.1	308.7	1.47	74.7	12.1	208.6	33.1	284.9	49.7	356.1	61.6	417.0

주: 소득액은 초과~이하로 구분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 정원석(2022)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근로자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으므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사적연금인 연금계좌를 통해 적절한 노후소득원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저축 여력이 낮고 과세표준이 0원인 과세 미달자가 많아 현재의 세액공제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연금계좌 납입 유인 요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표 II-4〉 연도별 연금계좌 납입자 중 소득계층별 과세 미달자 비율

(단위: 만 원, %)

연도	전체	1,000 이하	1,000~2,000	2,000~4,000	4,000~6,000	6,000~8,000
2014	14.3	99.0	80.8	23.4	2.8	0.2
2015	8.7	88.0	63.1	14.9	1.5	0.1
2016	8.5	95.5	72.6	15.2	1.5	0.1
2017	7.6	91.8	66.1	14.0	1.3	0.1
2018	7.4	93.6	67.6	14.6	1.2	0.1
2019	7.3	94.4	67.2	14.3	1.0	0.1
2020	8.1	93.6	71.8	17.6	0.9	0.1

주: 소득액은 초과~이하로 구분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직접 산출함

라. 낮은 운용수익률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5년 연평균 수익률은 1.96%,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2.39%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은 1% 수준이다.

〈표 II-5〉 제도 유형별 운용방식별 기간별 수익률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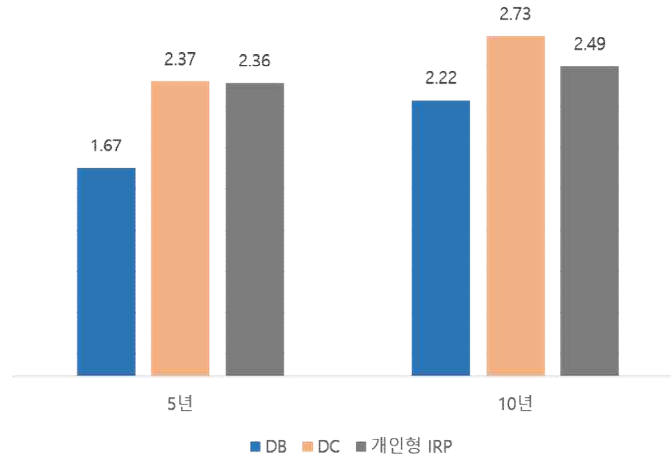
방법	구분	DB	DC	개인형 IRP	전체
전체	5년	1.67	2.37	2.36	1.96
	10년	2.22	2.73	2.49	2.39
원리금보장형	5년	1.64	1.50	1.52	1.59
	10년	2.18	2.35	1.93	2.19
실적배당형	5년	3.33	5.79	5.51	5.18
	10년	3.27	4.40	4.20	4.09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퇴직연금 통계

수익률을 운용방식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DB형의 5년과 10년 평균수익률은 1.67%와 2.22%, DC형은 2.37%와 2.73% 그리고 개인형 IRP의 경우에는 5년 평균수익률 2.36%, 10년 평균수익률 2.49%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운용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익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DC형 혹은 IRP의 경우 가입자가 본인 소유의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운용지시를 직접 내리므로 자산운용에 많은 신경을 쓰고 위험도와 수익률을 감안하여 자산운용 지시를 내릴 유인 요소가 충분하다. 반면, DB형의 경우 퇴직연금 담당자가 (대리인) 자산운용 방식을 결정하므로 높은 수익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변동성을 감내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추종하는 투자를 결정할 유인 요소가 없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 자산운용 담당자는 수익률과 위험을 감안한 실적배당형 포트폴리오보다는 투자 원금이 보존되는 원리금보장형 투자방식을 선호할 유인 요소가 많다. DB형보다 DC형 혹은 개인형 IRP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은 이러한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자산운용의 이해(利害)가 일치하는 정도(Interest Alignment)가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1〉 제도별 기간별(5년, 10년) 연평균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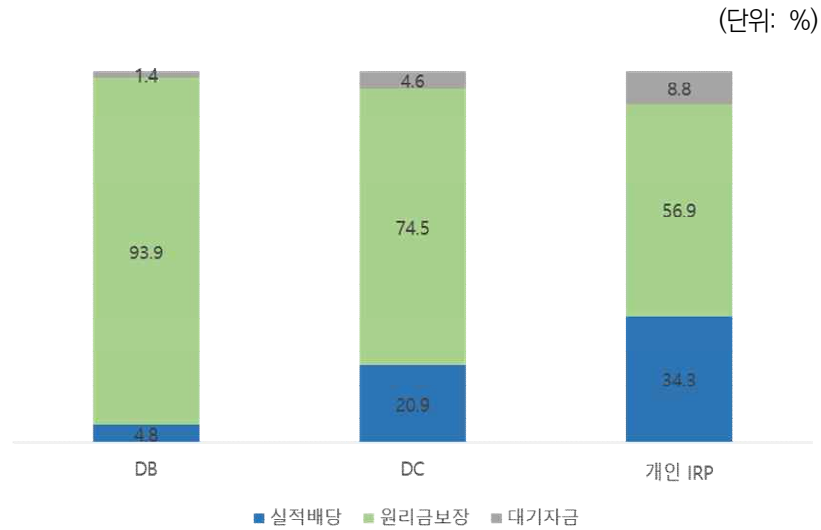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퇴직연금 통계

자산운용 지시자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제도별 적립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DB형의 경우 실적배당형 운용 비율이 4.8%이고 원리금보장형 운용 비율은 93.9%였다. 한편, DC형은 실적배당형 운용 비중이 20.9%, 개인형 IRP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통한 자산운용 비율이 34.3%에 달한다. 이는 DB형에서 앞서 언급한 대리인 문제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개인형 IRP 가입자는 세제혜택 등에 따라 현재 소비를 줄이고 자발적으로 노후자금을 적립한 개인으로서 수익률에 매우 민감한 가입자 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개인형 IRP 가입자 그룹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 비율이 높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림 II-2〉 제도별 적립금 운용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퇴직연금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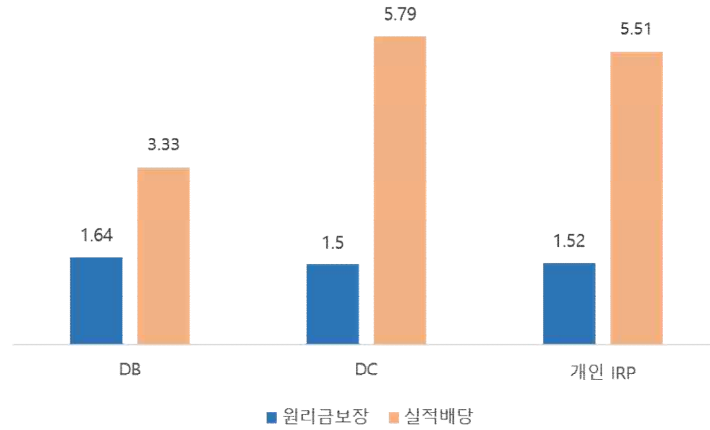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상품별 수익률의 경우 5년 수익률을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 DB형의 경우 원리금보장형은 1.64%, 실적배당형은 3.33%였다. DC형의 경우에는 원리금보장형이 1.50%, 실적배당형은 5.79%, 개인형 IRP는 원리금보장형이 1.52%, 실적배당형은 5.51%의 수익률을 거두어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의 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위해서 더 높은 변동성을 감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재무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변동성을 감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

5) 10년 기준으로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은 DB형이 2.18%와 3.27%, DC형이 2.35%, 4.40% 그리고 IRP가 1.93%, 4.20%로 5년 수익률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음

〈그림 II-3〉 투자상품별 기간별(5년, 10년)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퇴직연금 통계

연금저축 역시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수익률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연금저축 수익률은 3~4% 수준이었다. 이를 업권별로 나누어서 보면 금융투자 업권의 연금저축 펀드를 제외하면 1% 수준의 수익률에 불과했다. 다만, 펀드를 중심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에 활발하게 투자하는 금융투자업계의 수익률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퇴직연금에서 언급한 원리금보장형에 치중한 포트폴리오로 인한 낮은 수익률의 문제점이 연금저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6〉 연금저축 업권별 수익률 현황

(단위: %)

연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신탁)	금융투자(펀드)	전체
2019	1.84	1.5	2.34	10.5	3.05
2020	1.77	1.65	1.72	17.25	4.18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4. 6), “연금저축 현황 분석”

마. 낮은 연금화 수령 비율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55세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연금을 개시한 397,270개 계좌 중 4.3%(16,984개 계좌)가 연금 형식으로 수령되었다. 나머지 95.7%(380,286개 계좌)는 일시금으로 수령되었다. 이를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 수령한 9.3조 원 중 34.3%에 해당하는 3.2조 원이 연금으로 지급되고, 연금 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8,858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시금으로 수령한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15만 원으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가입자 적립금의 8.6%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7〉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단위: 좌, %, 억 원)

구분	연금 수령		일시금 수령		합계	
	퇴직급여	비중	퇴직급여	비중	퇴직급여	비중
계좌 수(A)	16,984	4.3	380,286	95.7	397,270	100.0
금액(B)	32,028	34.3	61,398	65.7	93,426	100.0
계좌당 금액(B/A)	1.89	-	0.16	-	0.24	-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퇴직연금 통계

이는 적립금이 적은 가입자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월 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적립금이 많은 가입자는 연금 수령으로 인한 퇴직소득세 감면(30~40%)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립금을 연금으로 받을 유인 요소가 많아진다. 예를 들어, 20년간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2억 원인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 퇴직소득세액은 약 730만 원 이 된다.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730만 원을 일시금으로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30% 감면된 511만 원을 10년 동안 1년에 51.1만 원씩 나누어서 납부하면 된다.⁶⁾ 따라서 적립금 수준이 높은 가입자는 연금화 수령(Annuitization)에 대한 유인 요소가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6) 동 계산은 예를 들기 위해 금액과 근무 기간만을 고려하여 단순하게 퇴직소득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다른 요건에 따라 계산된 세액에 오차가 있을 수 있음

3. 소결

연금개혁으로 공적연금 급여가 지금보다 적어진다면 부족해진 노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 사적연금은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은퇴자의 노후소득원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중도 인출 및 이직으로 인한 인출 등으로 퇴직연금 자산이 지속적으로 적립되지 못하는 부분을 들 수 있다. 둘째, 낮은 수익률로 인한 적립금이 적절히 증식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사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스웨덴과 호주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그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Ⅲ

해외사례

해외사례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공적연금 위기를 겪고 공적연금 구조개혁과 공적연금 부족분을 사적연금을 활용해 보완한 스웨덴의 사례, 사적연금 도입 및 운용의 성공사례인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적연금 활용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1. 스웨덴

가. 연금제도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0층과 1층의 공적연금, 2층의 직역연금, 3층의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0층의 최저보증연금(Guarantee Pension; GP)은 연금소득조사를 통해 연금수급액이 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최저연금을 보장하여 보충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적연금 수급액이 낮은 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최저보증연금은 스웨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무연금 또는 저연금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일반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1층의 공적연금은 소득비례연금인 소득연금(Income Pension; IP)과 프리미엄연금(Premium Pension; P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연금(IP)은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NDC)방식,⁷⁾ 프리미엄연금(PP)은 확정기여방식(Fully Funded Defined Contribution; FDC)으로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는 소득연금과 프리미엄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으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총 18.5%이다. 이 중 16%는 기존 연금수급자의 소득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7) 소득연금은 매월 납부해야 할 보험료만 정해져 있을 뿐 은퇴 후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약속되어 있지 않은 확정기여형 방식임. 원래 확정기여형은 개인별로 보험료를 적립해야 하지만 소득연금은 매달 거둬들인 보험료의 대부분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부과방식의 연금임. 대신 소득연금의 보험료는 가입자별 가상계좌를 만들어 적립해두고 그 돈을 다시 연금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명목'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르고 있음

사용되며 나머지 2.5%는 납입자 프리미엄연금 계정에 적립된다. 소득연금과 프리미엄연금 모두 가입자가 납입한 만큼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층의 직역연금(Occupational Pension)은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 중앙과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을 의미한다. 직역연금은 민간에서 운용하고 관리하는 연금이지만 근로자의 90% 이상이 가입된 준강제적 연금제도이다. 직역연금은 4가지 직군의 단체협약에 의해 설계된 제도로 매년 발표되는 기준소득에 따른 등급별 보험료를 적용하여 납부되고 있다. 3층은 개인연금으로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은행, 보험회사 등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을 의미한다.

〈그림 Ⅲ-1〉 스웨덴 노후소득보장체계



주: 관련 자료들을 참조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나. 스웨덴 연금제도 개혁

1) 제도 도입 배경

스웨덴은 1913년 모든 스웨덴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논의와 연금개혁을 거쳐왔다.

1913년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스웨덴의 노인 부양은 사적 부양체계에 의존하였으며, 공적인 영역의 책임은 지방정부나 민간 개별 직역연금제도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이후 1913년 도입된 공적연금은 기여와 급여가 연계되는 완전적립식 소득비례연금과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보충연금으로 구성되었다. 그

러나 당시 도입된 공적연금체계는 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저연금 문제로 인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스웨덴은 연금보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금제도 개혁을 시행하였다. 소득비례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급여수준이 낮고, 물가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급여의 실질 가치가 보장되지 않았고, 대부분 노인들이 보충연금을 수급하게 되었다.

이후 소득비례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1935년 연금개혁을 통해 기존의 소득비례연금을 보편적 정액급여형태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였으며 보충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을 인상하였다. 기존 공적연금제도는 1946년 기초연금제도(Allmän Fork Pension; AFP)의 도입, 1960년 소득비례연금인 부가연금(Allmän Tilläggs Pension; ATP, 이하 'ATP'라 함) 도입과 1969년 특별보충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연금제도의 체계를 갖추나갔다.

1946년 도입된 기초연금제도(ATP)는 기존 소득비례연금과 보충연금을 통합한 제도이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고령자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급여수준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1960년 소득비례연금인 부가연금(ATP)이 도입되었다. 1969년에는 ATP 수급자와 기초연금만 받고 있는 노인과의 격차가 부각되면서, ATP 미수급자나 저연금자를 대상으로 ATP 급여수준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특별보충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금융위기에 접어들면서 스웨덴의 경제상황은 연금을 도입하던 1960~70년대 상황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60세 이후에도 근로를 지속하는 고령근로자의 비율은 남성을 기준으로 1970년대 67%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말에는 4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60세 기준 기대여명은 여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70년대 말 19.3년에서 24.2년으로 5년 가까이 증가하였다. 인구구조도 1970년대에는 경제활동인구 3.8명이 노인 1인을 부양하는 수준이었지만 203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5명이 노인 1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경제성장을 역시 연금제도가 도입되던 1960년대에는 연평균 4% 이상이었으나 1990년대 말에는 1.85% 수준이었다. 따라서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연금제도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인구 소득의 37.5%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전망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본격적으로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표 III-1〉 스웨덴 경제 상황의 변화

(단위: %)

구분	성별	1970년대 말	1990년대 말
고령자 근로 비율	남	0.67	0.49
	여	0.34	0.37
60세 기대여명	남	17.3년	20.2년
	여	19.3년	24.2년
부양비		3.8	1.5(2030)
경제성장률		4.45(1960s)	1.85

주: 부양비는 노인 1인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함(경제활동 인구/연금수급자)

자료: Klevmarken(2002)

〈표 III-2〉 스웨덴 개혁이전 연금 2030년 비용을 시나리오

(단위: %)

구분	부양비	소득대체율	비용률
시나리오 1	1.60	60.0	37.5
시나리오 2	2.25	60.0	27.0
시나리오 3	1.60	43.0	27.0

주: 부양비는 노인 1인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함(경제활동 인구/연금수급자)

자료: Sweden government(2000)

이후 연금재정을 안정화하고 고령화 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을 목표로 1998년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새로운 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때의 개혁으로 현재 기여한 만큼 수령하는 연금체계를 구축하였다.

스웨덴은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기존의 기초연금(AFP)과 부가연금(ATP)을 소득연금(IP)과 프리미엄연금(PP)으로 전환하였다. 기존 공적연금의 확정급여방식은 폐지되고, 소득연금(IP)은 명목확정기여방식(NDC)으로 프리미엄연금은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하였으며, 소득연금과 프리미엄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최저보증연금(GP)를 도입하여 무연금·저연금 수급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표 Ⅲ-3〉 제도 변천 과정

연도	주요 내용
1913년	• 1913년 모든 스웨덴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함 • 소득비례연금(기여연금)+보충연금(소득 및 자산조사 기반)
1946년	•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지급되었던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을 통합하여 거주요건 충족 시 일정 금액을 수급할 수 있는 보편적 기초연금제도(AFP)로 전환함 •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정액급여를 지급함
1960년대	• 1960년대에는 소득비례연금인 부가연금(ATP)이 재도입되면서, 공적연금제도가 다시 기초연금제도(AFP)와 소득비례연금(ATP) 구조의 2층으로 구성되었으며, 빈곤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보충연금제도를 실시함 • 재도입된 소득비례연금은 강제가입 방식이며, 가입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추가연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함 • 소득비례연금의 도입 이후 기초연금만 받는 수급자와 소득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1969년 특별보충연금제도를 도입함 - 기초연금만으로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금의 최대 55.5%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
1998년	•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새로운 공적연금제도 도입 • 기존의 기초연금(AFP), 부가연금(ATP), 특별보충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연금(IP)과 프리미엄연금(PP)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특별보충연금제도를 대체하는 최저보증연금(GP)제도를 도입함

자료: 이미연(2021)

2) 1998년 개혁 주요 내용

1998년 개혁 이전까지 스웨덴의 연금체계는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인 기초연금(AFP)과 소득비례연금(ATP)에 특별보충연금이 덧붙여진 체계였다면, 개혁 이후에는 공적연금의 비중을 축소하고 개인연금의 역할을 확대하여 연금제도의 주체를 국가에서 개인과 기업으로 전환하게끔 도모하였다(송지원, 2018).

1998년 스웨덴 연금개혁의 큰 특징은 ① 최저보증연금(GP), ② 소득연금(IP), ③ 프리미엄연금(PP), ④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III-4〉 스웨덴 공적연금시스템

구분	0층	1층	
	최저보증연금	소득연금	프리미엄연금
요금	0%	16%	2.5%
방식	정부지급	부과방식	적립방식
운용	일반재정	AP1~4, AP6	AP7 또는 민간펀드
특징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기여한 만큼 수령	기여한 만큼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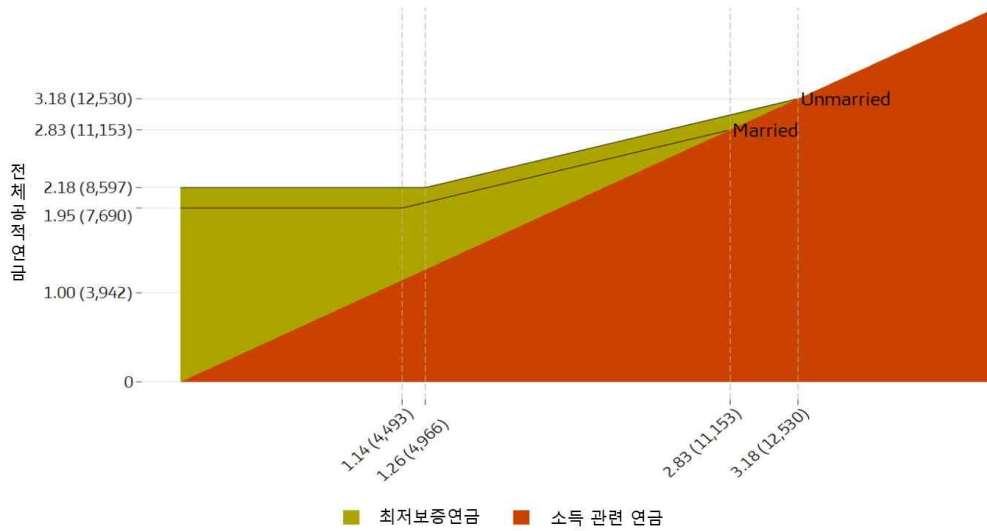
자료: 송지원(2018)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① 최저보증연금(GP)

첫 번째로 최저보증연금(GP)은 거주요건을 충족한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던 기초연금과 특별보충연금을 없애고 취약계층 중 노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을 전체 노인에서 저소득층으로 대폭 축소한 대신, 그 급여액은 기초연금과 부가급여를 합한 급여액보다 관대해졌다(Hagen, 2013). 최저보증연금은 소득 및 자산조사 대신 연금소득을 조사하여 연금수급액(IP+PP)이 최저보증연금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지급한다. 연금소득 조사 시에는 대상자의 자산이나 사적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지 않고, 공적 연금의 급여만을 고려한다. 최저보증연금액은 거주기간 및 결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수급요건은 스웨덴에 최소 3년 이상 거주한 무연금 또는 저연금 수급자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최저보증연금액이 증가하며 40년 이상인 경우 완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40년을 거주한 독신자의 경우 최대 10,631SEK, 기혼인 경우 9,625SEK를 수령하며, 재원은 전액 중앙정부의 일반조세로 충당하고 있다. 최고 GP 급여액은 육체노동자들 평균임금의 약 35%에 해당하며, 퇴직 후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Hagen, Johannes, 2013).

다음 〈그림 III-2〉는 최저보증연금의 지급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하단의 삼각형 영역은 소득연금과 프리미엄연금 수령액이다. 만약 소득 관련 연금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는 최저보증연금을 통해 최저소득수준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부부의 연금소득이 0SEK라면 최저보증연금이 월 8,597SEK가 지급된다. 부부의 연금소득이 4,966SEK를 넘기 시작하면 지급되는 최저보증연금액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연금소득이 12,530SEK에 도달하면 최저보증연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2021년 기준).

〈그림 III-2〉 스웨덴 최저보증연금 연금지급 구조



주: 2021년 자료로 본문에 제시된 2023년과 수치상 차이가 있음
자료: Sweden government(2022)

② 소득연금(IP)

두 번째로 기존 확정급여방식(DB)으로 지급되었던 소득비례연금인 부가연금(ATP)이 폐지되는 대신,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NDC, 이하 'NDC'라 함)방식의 소득연금제도(IP)가 도입되었다. 명목확정기여방식은 연금액이 가입 기간 동안 운영한 기금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으로, 개인별 가상계좌에 적립하여 축적된 보험료와 수익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소득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경제성장률만큼의 수익률이 적용되는 구조로 남은 수명도 반영되도록 설계하였다. 소득연금의 수익률은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정부가 정하는 가상 수익률을 적용하고 있다.⁸⁾ 명목확정기여방식은 은퇴 시점의 기대여명을 반영해 명목상의 적립금을 연금액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늦게 은퇴할수록 기대여명이 짧아져 연금이 증가하게 된다.

$$\text{소득연금 연금액} = \frac{(\text{총기여액} + \text{가상이자})}{\text{퇴직시점의 잔여기대수명}}$$

8) 가상 수익률=실질 소득상승률(3년 평균 명목소득상승률-3년 평균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정함

소득연금제도 적용 대상은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연금보험료는 18.5%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급여의 9.25%씩 부담하고 있다. 이 중 16%는 소득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프리미엄연금 계정에 적립되고 있다. 소득연금의 재원은 보험료와 국고에서 충당하고 있다. 소득연금제도의 의무가입대상은 스웨덴 거주 및 근로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없으며, 연금 가입을 위한 연령 상한과 하한은 2004년 폐지되었다. 2023년 기준 연금수급은 63세부터 가능하다.

스웨덴은 소득연금을 통해 거둬들인 보험료 중 연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자금을 모아 정부 운용의 완충기금(Buffer Funds)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AP 펀드'라고 명칭하고 있다. 소득연금 기금은 정부의 AP1~4, AP6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연금수급자 급증이나, 고용률 하락, 임금 하락 등으로 인한 연금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깨질 때 충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프리미엄연금(PP)

스웨덴은 보험료의 2.5%를 프리미엄연금 계좌에 적립하여 정부가 운용하는 펀드(AP7) 혹은 민간부문의 보험, 은행, 투자회사 등이 운용하는 연금펀드를 통해 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가입자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상품은 정부에서 운용하는 AP7 펀드와 65개 금융회사의 485개 펀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재원은 본인의 연금보험료 2.5%의 누적치와 누적된 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수익으로부터 마련하며, 연금 가입자는 언제든지 기금 운용자와 금융기관을 바꿀 수 있으나 중도 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프리미엄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공적연금이지만 적립금 운용은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운용되며, 은퇴 이후 수령하는 연금액은 사적연금과 동일하게 기여금에 운용수익을 더한 총적립금을 기대여명으로 나누어 결정한다. 이러한 사적연금의 특징 때문에 OECD 등에서는 프리미엄연금을 강제개인연금(Mandatory Personal Pension)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text{프리미엄연금 연금액} = \frac{(\text{총기여액} + \text{운용수익})}{\text{퇴직시점의 예상미래기대수명}}$$

④ 자동조정장치 도입

스웨덴은 소득연금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령화와 연금재정을 연동해 연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였으며, 기대여명에 따른 자동조정장치와 연금 재정 상태에 따른 자동조정장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기대여명에 따른 자동조정장치’는 수급자의 연령별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로, 수급자의 기대여명이 증가할 경우 연금화제수가 상승하여 연도별 연금급여가 자동으로 감액되는 구조이다. 스웨덴은 퇴직 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을 연금화제수로 나누어 연금을 산정하는데, 기대여명이 증가하면 연금화제수가 오르도록 산식을 마련하였다. 연금화제수는 퇴직 시점에 출생코호트별 기대여명을 반영하여 산출된다.

두 번째로, ‘연금재정 상태에 따른 자동조정장치’는 소득연금의 총자산과 총연금부채의 비율인 균형비율(Balance ratio)을 활용하여, 연금부채가 자산보다 커져 1 이하로 낮아지면 소득연금제도의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해 자동으로 작동하여 연금액이 조정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균형비율이 1 이하로 낮아지면, 연금액에 적용되는 ‘소득지수(Income indexation)’를 소득지수보다 낮은 ‘균형지수’로 바꾸어 적용하여 금액이 조정된다. 자동조정장치가 작동되면 소득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감소하지만, 그 결과로 소득연금제도의 재정이 회복되어 비율이 1 이상으로 높아지면 소득대체율도 다시 높아지게 된다(이미연, 2021).

다. 현 제도 현황

1) 제도 개정 현황

스웨덴은 최근 ① 연금수급 연령의 상향조정, ② 연금보충제도(Inkomstpensionstillägg) 도입이 이루어졌다.

연금수급 연령과 관련하여 스웨덴 의회는 2017년 12월 이루어진 연금위원회의 협약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까지 공적연금 수급연령을 61세에서 64세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0년 1월부터 공적연금 수급연령을 61세에서 62세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2023부터는 63세로 상향조정 했다. 최저보증연금(GP), 소득연금보충금(IPT), 주거수당의

수급연령은 2023년부터 65세에서 66세로 상향했다. 또한 2026년부터는 공적연금 수급연령 및 보증연금 수급연령에 기대여명과 연결시키는 목표연령(Riktåldern, target age)⁹⁾이 적용될 예정이다. 목표연령은 스웨덴의 평균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매년 계산하여 6년 뒤에 적용될 연금수급연령을 정하는 것으로, 2020, 2021, 2022년의 목표연령은 67세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26~2028년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연금보충제도의 경우 스웨덴은 2021년 9월부터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보충제도(Inkomstpensionstillägg; IPT)를 도입하였다. 스웨덴은 1층의 공적연금이 부족한 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최저보증연금(GP)과 주거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스웨덴 연금위원회 근로를 통한 연금수급자의 연금액과 근로소득이 없었던 자의 연금액 간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정부 재정을 활용한 연금보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022년 기준 공적연금 수급자 약 233만 명 중 126만 명이 연금보충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의 연금액이 인상되었다.

연금보충제도의 수급요건은 66세 이상이어야 하며(1957년 이전 출생자; 65세) 소득비례연금(IP 또는 ATP)을 수령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최소 1년 이상의 근로활동, 월 소득비례 연금액이 9,495~17,935SEK이어야 한다. 연금보충금액은 2022년 기준 월 최대 600SEK까지 지급하며, 월 소득비례연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

2021년 연금보충제도가 도입되면서, 스웨덴 공적연금은 소득연금(IP), 프리미엄연금(PP), 소득연금보충(IPT), 최저보증연금(GP), 부가연금(ATP)으로 구성되었다. 연금개혁 이후 구제도와 신제도에서 결정되는 연금액은 개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1937년 이전 출생자는 부가연금(ATP) 적용을 받고 1938~1953년 사이 출생자는 ATP와 현재의 소득연금제도의 적용을 모두 받으며 1954년 이후 출생자는 현재의 소득연금을 적용받게 된다.

9) PENSIONS MYNDIGHETEN(2023)

〈표 III-5〉 1998년 연금개혁 전후 주요 내용 비교

구분	개혁 이전	개혁 이후
연금 구조	1) 확정급여(DB)형 기초연금(AFP) 2) 소득비례연금(ATP) 3) 특별보충연금	1) 명목확정기여(NDC)형 소득연금(IP) 2) 확정기여형(FDC) 프리미엄연금(PP) 3) 최저보장연금(GP)
지급 개시 연령	65세	61세(2023년부터는 63세, 시기 늦출수록 증액됨)
적용 범위	1) 기초연금(AFP): 모든 국민 2) 소득비례연금: 기준소득액(Base amount) 이상의 소득을 가진 모든 피용자와 자영자 3) 부분연금: 소득비례연금 동일	1) 확정기여연금: 모든 피용자와 자영자 2) 적립식 개인연금: 모든 피용자와 자영자 3) 최저보장연금: 모든 거주자
보험료	1) 기초연금 • 피용자: 기여하지 않음 • 자영자: 평가소득의 6.03% • 사용자: Payroll의 5.86% • 정부: 비용의 약 25% 2) 소득비례연금 • 피용자: 평가소득의 1% • 자영자·사용자: 13.0% • 정부: 기여하지 않음 3) 부분연금 • 사용자·자영자: 0.2% • 정부: 기여하지 않음	1) 피용자: 기준소득액의 24%를 초과하는 소득부터 기준소득액의 7.5배까지 평가 소득의 9.25% 2) 사용자·자영자: Payroll의 9.25% 3) 정부 : 최저보장연금의 비용 부담 ※ 보험료의 구성: 사용자와 피용자의 보험료 합계인 18.5%는 확정기여연금부분 16%와 적립식 개인연금(개인계정)부분 2.5%로 구성됨
재정방식	PAYG(Pay As You Go)	NDC

자료: Eknews(2008); 국민연금연구원(2012)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2) 현황

2022년 말 기준 소득연금 수급자 200만 명의 약 50.4%(101만 명)는 소득연금과 최저보증 연금을 함께 받고 있으며, 전체 공적연금지급액¹⁰⁾에서 최저보증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로 1,880,800,889SEK(한화 약 2,283억 원¹¹⁾)에 해당한다. 스웨덴 의회는 2022년 6월 최저보증연금액을 1인 기준 최대 10,631SEK까지 인상하였으며, 소득비례연금의 소득 기준 상한선 또한 확대하면서 최저보증연금 수급자는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다. 2021년

10) 소득연금(IP), 프리미엄연금(PP), 소득연금보충(IPT), 최저보증연금(GP), 부가연금(ATP) 지급액의 합을 의미함

11) 1SEK=121.41원(2023년 2월 12일 기준)

말 수급자 수는 69만 명, 2022년 말 수급자 수가 101만 명으로 새로운 연금수급자 수가 약 32만 명 증가하였다.

소득연금보충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는 2022년 말 약 126만 명으로 소득비례연금(IP+ATP) 수급자의 약 33%가 소득연금보충액을 수급하고 있다. 총 지급액은 514,153,018SEK (한화 624억 원)으로 총 공적연금 지급액의 2%에 해당한다. 100% 정부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최저보증연금과 소득연금보충액이 전체 공적연금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로 비중이 크지 않으나, 최저보증연금 수급자 수와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표 III-6〉 스웨덴 공적연금 유형별 수급자 및 지급액(2021~2022년)

(단위: 명, SEK, %)

구분	2021		2022	
	수급자 수	지급액	수급자 수	지급액
공적연금	2,301,730	30,958,396,827	2,326,888	33,278,347,283
최저보증연금(GP)	688,881 (30)	1,160,191,673 (4)	1,006,407 (43)	1,880,800,889 (6)
소득연금보충금(IPT)	1,247,446 (54)	50,915,316 (2)	1,260,329 (54)	514,153,018 (2)

주: 괄호 안 수치는 공적연금 수급자 수와 지급액에서 해당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Swedish Pension Agency(2023)

라. 기대소득대체율

제도개혁 이후 기대되는 소득대체율은 21세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연금에 가입하고 65세 은퇴 시 소득연금으로부터 약 37%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고, 프리미엄연금과 퇴직연금에 각각 2.5%와 2.0%씩 적립한 후 수익률을 5%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할 때 22%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소득연금(IP), 프리미엄연금(PP) 그리고 퇴직연금을 합친 총 소득대체율은 약 61%로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표 III-7〉 사적연금 수익률에 따른 기대소득대체율

(단위: %)

은퇴 연령	소득연금	프리미엄(2.5%)+퇴직연금(2%)			전체(IP+PP+퇴직)		
		수익률			수익률		
		2%	5%	8%	2%	5%	8%
64세	0.37	0.10	0.20	0.43	0.48	0.58	0.80
65세	0.39	0.11	0.22	0.47	0.51	0.61	0.86
66세	0.42	0.12	0.23	0.52	0.53	0.65	0.93
67세	0.44	0.12	0.25	0.57	0.57	0.69	1.01
68세	0.47	0.13	0.27	0.63	0.60	0.74	1.09
69세	0.50	0.14	0.29	0.69	0.64	0.79	1.19

자료: Edward Palmer(2003)

마. 스웨덴 연기금 운용 현황

1) 소득연금(IP)

스웨덴 연기금 운용 펀드인 AP는 재무성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소득연금의 준비금과 프리미엄연금의 적립금 일부를 운용하고 있다. 소득연금의 준비금은 2000년에 설립된 AP1부터 AP4, AP6과 같은 5개 정부기금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AP1부터 AP4까지는 동일한 초기자본금과 투자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상호독립적이고 경쟁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산구성, 투자정책, 운용조직, 위험관리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AP1~AP4와 달리 AP6는 주로 국내 비상장기업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AP 기금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펀드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연금수급자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임금 하락, 고용률 하락 등과 같이 예기치 못한 지출로 인해 연금수급과 지출의 균형이 깨질 때 충격을 막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 III-8〉 AP 기금 현황(2021년)

(단위: 억 SEK, %)

구분	기금 규모	수익률(연평균, 10년)
AP1	4,660	20.8(16.9)
AP2	4,410	16.3(9.5)
AP3	5,023	20.7(11.1)
AP4	5,276	19.2(11.8)
AP6	673	49.1(13.8)
AP7	9,669	31.5(15.0)

자료: AP1, AP2, AP3, AP4, AP6, AP7, 각 연례보고서

AP는 매달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연금지급에 충당하고 남은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펀드 AP1~AP4와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펀드 AP7을 합한 국가 전체 연금펀드의 규모는 2021년 기준 2조 400억 SEK 수준이다. AP1~AP4의 2021년 기준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10.7%, AP7의 수익률은 31.5%(연평균 15%)이며, AP1~AP4의 자산구성은 주식, 채권, 기타투자가 약 5:3:2의 비율로 운용되고 있다.

2) 프리미엄연금

프리미엄연금의 적립금은 정부기관인 PPM이 관리하고 있으며, PPM은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일괄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투자된 자금은 PPM과 계약한 486개(2020년)의 민간 펀드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운용하며, 가입자들은 각 개별 펀드운용사가 제시하는 기대수익률과 투자위험을 고려해 최대 5개의 펀드운용사를 선택하여 자신의 선호에 맞는 자산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AP7은 적극적인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P7이 운용하는 자산은 전체 프리미엄연금(15,790억 SEK) 중 6,800억 SEK으로 43%에 달한다. 투자포트폴리오는 주식형펀드 5,820억 SEK과 지속가능 펀드 2,210억 SEK 등에 실적배당형 투자비율이 높다.

〈표 III-9〉 프리미엄연금 자산운용 현황

(단위: 개, 십억 SEK)

구분	2020년 등록펀드 수	연도별 운용자산규모				
		2016	2017	2018	2019	2020
주식형펀드	346	388	441	407	517	582
혼합형펀드	37	69	70	66	69	65
지속가능펀드	28	147	166	167	209	221
채권형펀드	74	127	26	30	31	31
AP7 Såfa	1	328	407	433	632	680
합계	486	959	1,110	1,103	1,458	1,579

자료: Sweden government(2022)

AP7은 가입자들에게 AP7 Såfa, AP7 Offensive, AP7 Balanserad, AP7 Försiktig 총 4가지 자산구성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선택지는 고위험 주식형펀드와 저위험 채권형펀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선택 옵션인 AP7 Såfa는 가입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55세 전까지는 고위험 주식형펀드에, 55세 이후부터는 최대 67%의 저위험 채권형펀드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표 III-10〉 AP7 프로그램별 자산구성(2021년)

(단위: %)

자산구성		고위험 주식형펀드 (AP7 Aktiefond)	저위험 채권형펀드 (AP7 Räntefond)
기본 선택	AP7 Såfa (생애주기 투자)	55세 이전: 주식형펀드 100% 55세 이후: 채권형펀드 비중이 67%까지 점진적으로 증가	
국가기금 포트폴리오	AP7 Offensive (공격적 투자)	75	25
	AP7 Balanserad (균형 투자)	50	50
	AP7 Försiktig (신중한 투자)	33	67

자료: 윤희숙·김도형·김종훈(2015)

〈표 III-11〉 AP7 및 민간펀드 수익률 추이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AP7	17.5	31.8	29.1	6.2	15.1	16.4	-2.7	32.2	4.4	31.5	-9.5
민간 펀드	10.2	16.8	17.0	6.5	8.6	10.4	-3.8	27.6	8.0	27.1	-15.1

자료: Swedish Pension Agency(2023)

바. 연금개혁 성과와 한계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보험료 인상 없이 NDC방식의 소득연금제도와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으로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이미연, 2021). 스웨덴의 GDP 대비 공적연금 급여 지출 비율은 2007년에는 9.5%, 2010년에는 9.6%이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평균 8.9%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장기적으로도 스웨덴은 2030년 이후에도 7%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I-12〉 스웨덴 GDP 대비 공적연금 급여 지출 비율 현황 및 전망

(단위: %)

구분	2007	2010	2013~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60
스웨덴	9.5	9.6	8.9	8.3	8.1	7.9	7.8	7.5	7.3	7.2	7.5
EU	-	-	11.3	11.2	11.4	11.6	11.7	11.7	11.6	11.4	11.2
OECD	-	-	8.9	-	-	-	-	-	-	9.5	10.9

자료: OECD(2017); 이미연(2021)

스웨덴은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의 이중 공적연금체계를 소득비례연금과 조건부 기초연금 및 사회연금체계로 개편하였다. 이는 재정안정화를 주요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개혁이었으며, 그 결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개혁의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연금지출 추계를 살펴보면 연금개혁 이후 스웨덴의 공적연금 재정지출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 II-13〉에 따르면 2019년의 연금지출은 GDP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로써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지출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III-13〉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용 추계(2019년)

(단위: %)

	구분	2019	2030	2040	2050	2060	2070	2019~2070
스웨덴	총 공적연금	7.6	7.4	7.0	7.0	7.4	7.5	-0.1
	노령연금	6.7	6.5	6.2	6.2	6.6	6.7	0.1
EU	총 공적연금	11.6	12.5	12.8	12.6	12.1	11.7	0.1
	노령연금	9.3	10.2	10.6	10.5	10.2	9.9	0.6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유호선·김혜진·문현경(2021)

다만, 1998년 연금개혁 이후 모든 계층의 소득대체율은 지속적 하락이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유호선 외, 2021). 연금개혁 이전 스웨덴 공적연금제도인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은 목표 소득대체율이 약 65%로 관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European Commission(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소득비례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4.2%, 2070년 소득대체율은 29.2%로, EU 국가들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2019년 46.2%, 2070년 37.5%인 것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유호선·김혜진·문현경, 2021).

〈표 III-14〉 공적연금 소득대체율(2019년)

(단위: %, %p)

구분	2019	2070	변화 정도
스웨덴	34.2	29.2	-4.4
EU	46.2	37.5	-8.7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유호선·김혜진·문현경(2021)

또한 소득대체율 감소와 함께 연금급여액이 낮아지면서 노인 빈곤 위험이 높아지는 한계가 있다. 40년 근로 및 65세 퇴직을 가정하여 소득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전망한 결과, 2005년 53%에서 2050년에 40.4%로 감소하여 44년 사이 13%p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대체율의 전망값이 40년 근로를 가정하여 추정된 점을 고려할 때, 가입기간이 40년 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소득대체율은 50% 이하로 낮아지고 노후 빈곤 위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미연, 2021). 2017년 기준으로 유럽연합 국가의 빈곤율¹²⁾은 14.3%로 나타났으며, 스웨덴에서는 노인들의 빈곤율이 2005년의 9.5%

12) 여기서 말하는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에서 2016년에는 17.9%로 상승하였다. 이 증가는 연금급여 감소로 인해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해 노인들의 빈곤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III-15〉 스웨덴 연금수급자의 빈곤율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스웨덴	9.5	11.3	9.5	15.3	16.2	14.3	16.7	16.7	15.9	14.4	17.2	17.9
EU	-	-	-	-	-	13.9	14.0	13.2	12.6	12.7	13.2	13.8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

2. 호주

가. 노후소득보장체계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3층의 연금제도로 구성되고 있다. 1층의 노령연금(Public Age Pension)은 거주 및 소득 등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재원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다. 2층의 퇴직연금(Superannuation)은 1980년대까지 대상자가 한정된 임의가입 제도로 운영되었지만 1992년부터 의무가입 제도로 전환된 이후 호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층에는 원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존재한다. 호주 사례에서는 사적연금 중 2층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중심으로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표 III-16〉 호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분	1층	2층	3층
명칭	노령연금(AP)	퇴직연금(SA)	개인연금
가입 적용방식	해당 대상 적용	의무가입	임의가입
재원	정부 재정	사용자 기여금	개인 기여금

주: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용자 기여금(법정기여금) 외에 자발적 기여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나. 노령연금

1층의 노령연금의 경우 출생 연도에 따라 65.5~67세 이상 노인에 대해 노령연금이 지급된다.¹³⁾ 2023년 기준 개인의 경우 연금으로 월 최대 971.5AUD(부부 1,464.6AUD)를 지급하나, 소득과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한다. 소득 기준으로 독신자(부부)의 경우 2주간 소득이 204(360)AUD 이하인 노령연금이 최대로 전액 지급되며, 1AUD 증가할 때마다 연금은 0.5(0.4)AUD씩 감액된다. 2주 소득이 2,332(3,568)AUD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층의 노후소득이 높을수록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다. 슈퍼애뉴에이션

1) 슈퍼애뉴에이션의 도입¹⁴⁾

1992년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도입 이전 호주에는 정부 재정으로 지급하는 노령연금 이외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단체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퇴직연금이 존재하였다. 당시 노령연금에만 의존하는 국민이 많아 노인 빈곤이 사회 문제가 되었으며, 높은 노인 빈곤율로 인해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노령연금의 재정부담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주 정부는 1992년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사용자가 기여금을 납입하는 퇴직연금인 슈퍼애뉴에이션을 도입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연금(슈퍼애뉴에이션) 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며, 최저 기여 수준은 1992년 3%에서 2022년 10.5%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2026년 12%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¹⁵⁾ 사용자의 법정기여금 적용 예외 대상은 ① 월 소득 450AUD 이하의 소득을 얻는 근로자, ② 18세 미만의 비정규 근로자, ③ 65세 이상의 근로자이다.¹⁶⁾ 적용 예외 대상 범위가 매우

13) 1952. 7. 1~1953. 12. 31생은 65.5세, 1954. 1. 1~1955. 6. 30생은 66세, 1955. 7. 1~1956. 12. 31생은 66.5세, 1957. 1. 1 이후 생은 67세부터 연금을 지급함

14) Australian Government, Superannuation

15) 임금 근로자는 사용자의 법정기여금 외에 자신의 소득으로 퇴직연금에 기여금을 추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없는 자영업자는 자신의 소득을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에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음

16) SuperGuide(2023)

제한적이고 호주 국세청에서 기여금 납부를 강제하기 때문에 슈퍼애뉴에이션 가입자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표 III-17〉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기여율 변화

(단위: %)

기간	기여율	적용방식
1992. 7~2002. 6	3~3.5	점진적 증가
2002. 7~2013. 6	9	-
2013. 7~2014. 6	9.25	-
2014. 7~2021. 6	9~9.5	-
2022. 7~2026. 6	10~12	점진적 증가

자료: APRA 홈페이지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 기금은 특성에 따라 기업형기금, 산업형기금, 공적기금, 소매형기금, 자기관리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금(사업자)은 가입자의 기금을 관리하고 금융기관에서 제조하는 금융상품 중 가입자가 가입할만한 상품을 선별하여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통해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자산이 운용될 수 있는 디폴트옵션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2005년 7월 기금선택제 도입으로 가입 근로자들은 본인이 속한 기업 또는 산업에서 제공되는 퇴직연금 기금뿐만 아니라 소매형 기금과 같은 다른 기금에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가입 근로자가 특정 기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기금에 자동 가입이 된다.

〈표 Ⅲ-18〉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기금 유형

유형	내용
기업형기금 (Corporate funds)	- 슈퍼애뉴에이션 기금의 원형 - 근로자를 위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기금 - 가입자격은 근로자로 제한되지만, 기금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도 가입 가능
산업형기금 (Industry funds)	- 특정 산업에 속한 근로자의 퇴직자산 관리를 위해 설립 - 가입대상이 특정 산업종사자로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도 가입이 가능
공적기금 (Public Sector funds)	- 정부기관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만 가입 - 가입자가 공공부문을 떠난 이후에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허용
소매형기금 (Retail funds)	- 주로 은행,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자산관리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 보험대리점이나 재무설계사를 통해 누구나 가입 가능 -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개인별 금융자문서비스에 대해 비용 부과
자기관리기금 (Self-Managed Super Funds; SMSFs)	- 최대 6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기금 - 가입자가 수탁자가 되어 기금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짐 - 주로 부유층이 가계 단위로 설립하여 운영

자료: 이경희(2018); 강성호 외(2022)

슈퍼애뉴에이션 가입자는 은퇴 후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은퇴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55~60세로 다르다. 또한 은퇴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적립금 수급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60세 이전의 가입자는 반드시 퇴직상태여야 하고 취업 의사가 없어야 하며, 60~65세의 가입자는 신청 당시 퇴직상태여야 한다. 65세 이상의 가입자는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적립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슈퍼애뉴에이션 적립금 수령 시 연간 최저 인출 금액은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다르다.

〈표 Ⅲ-19〉 은퇴 연령 및 최저 인출 비율

(단위: 세, %)

구분	출생 연도 또는 수령 연령	은퇴 연령 또는 인출 비율
은퇴 연령	1960년 7월 1일 이전	55
	1960년 7월 1일~1961년 6월 30일	56
	1961년 7월 1일~1962년 6월 30일	57
	1962년 7월 1일~1963년 6월 30일	58
	1963년 7월 1일~1964년 6월 30일	59
	1964년 6월 30일 이후	60
최저 인출 비율	65세 이하	4
	65~74세	5
	75~79세	6
	80~84세	7
	85~89세	9
	90~94세	11
	95세 이상	14

자료: moneysmart, "Getting your super"; Firstlinks(2019), "How much can retirees spend and not run out of money?"

한편, 중도 인출은 엄격히 제한되지만 〈표 Ⅲ-20〉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출이 가능하다.

〈표 Ⅲ-20〉 중도 인출 조건

세부 내용
• 영구 또는 일시적 장애, 장애로 인한 부대비용 발생 • 본인 사망, 장례비용 등 사망 시 부대비용 발생 • 호주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적립금이 200AUD 미만, 재무적 곤경에 처했을 경우 • 본인 또는 피부양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긴급 의료비 지출 • 주택 압류 등을 막기 위한 대출금 상환의 경우 • 치명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2년 내 사망 확률이 높은 경우

자료: Way forward, "Withdrawing super to pay debt: What you should know"

2) 중저소득층 재정지원

호주 정부는 2003년부터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슈퍼애뉴에이션 가입자

를 대상으로 공동기여제도(Co-contribution)를 도입하였다. 공동기여제도는 호주 정부가 자격이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 기여금의 일정 비율(최대 50%)로 보조금(최대 500AUD)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표 III-21>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¹⁷⁾

<표 III-21> 공동기여제도 적용 조건, 지급비율 및 예시

구분	세부 내용
적용 조건	- 연령: 71세 미만 - 소득 구간: 2022~2023 회계연도 과세소득은 57,016AUD 이하, 소득의 10% 이상이 고용 또는 사업 소득인 경우 - 퇴직연금 기여금 납부 금액: 가입자의 기여금 납부 금액은 정부가 발표한 한도(11만 AUD, 2022~2023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급 비율	- 연간소득이 39,837AUD 미만: 50% - 연간소득이 39,837AUD 이상 45,837AUD 미만: 40% - 연간소득이 45,837AUD 이상 48,837AUD 미만: 30% - 연간소득이 48,837AUD 이상 51,837AUD 미만: 20% - 연간소득이 51,837AUD 이상 54,837AUD 미만: 10% - 연간소득이 54,837AUD 이상: 0%
예시	- 가입 근로자의 연간소득이 35,000AUD일 때 사용자가 납입하는 기여금 외에 가입자가 연간 1,040AUD를 보험료로 추가 납입함 - 납입된 보험료(1,040AUD)에 50%의 비율을 적용한 보조금(500AUD)은 가입자의 연금계좌로 자동 입금됨

자료: Australian Taxation Office(2023), "Super co-contributions"

퇴직연금 가입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호주 국세청(ATO)은 자격이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계좌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며, 해당 보조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또한 호주 정부는 2017년부터 연간 과세소득 37,000 미만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추가 적립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환급제도(Low income super tax offset)를 시행하였다.¹⁸⁾ 세액환급제도는 자격이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부과된 세액의 15%¹⁹⁾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AUD 한도)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호주 퇴직연금기금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25만 명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세액환급제도의 적용 대상이며, 평균 환급금은 약

17) Australian Taxation Office(2023), "Super co-contributions"

18) Australian Taxation Office(2023), "Low income super tax offset"

19) 호주 정부는 퇴직연금 적립단계에 있어서 기여금에 대해 15%의 세율로 과세함

370AUD이다. 한편, 2019~2020년 호주 정부는 저소득층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7억 AUD 이상의 세액 금액을 환급하였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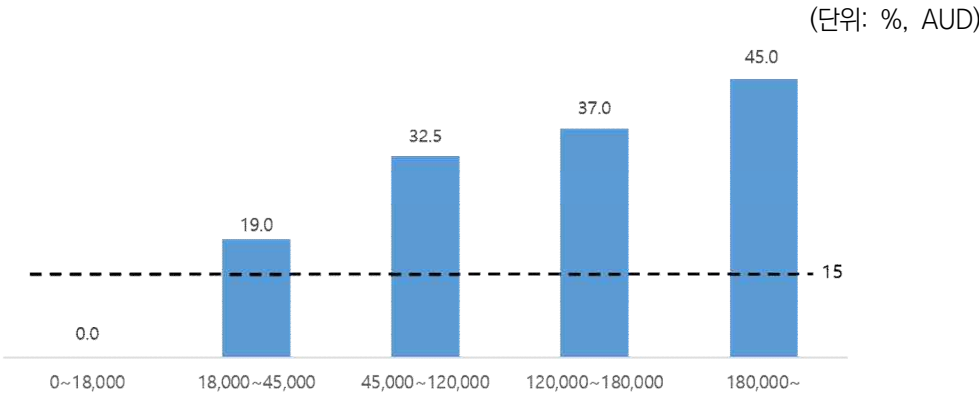
〈표 Ⅲ-22〉 세액환급제도 적용 조건 및 예시

구분	세부 내용
적용 조건	- 연령: 71세 미만 - 소득 구간: 2022~2023 회계연도 과세소득은 37,000AUD 이하, 소득의 10% 이상이 고용 또는 사업 소득인 경우 - 퇴직연금 기여금 납부 금액: 가입자의 기여금 납부 금액은 정부가 발표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시	- 가입 근로자의 연간소득이 32,000AUD일 때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금계좌에 2019년 기준 기여율인 9.5%에 해당하는 금액 3,040AUD를 보험료로 납입해야 함 - 납입된 보험료(3,040AUD)에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세액환급금(456AUD)은 가입자의 연금계좌로 자동 환급됨

자료: Australian Taxation Office(2023), “Low income super tax offset”

마지막으로 슈퍼애뉴에이션에 가입된 모든 가입자는 일정한도(2023년 기준 27,500AUD) 추가 납입에 대해서는 15%까지 저율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호주의 소득세율²¹⁾은 19~45% 수준이므로 15%의 저율과세는 30%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납입 시 저율과세를 받고 난 이후 은퇴 연령 이후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림 Ⅲ-3〉 호주의 소득세율과 저율과세



자료: NCBipc(2023), “AUSTRALIAN TAX BRACKET 2023: ALL YOU NEED TO KNOW THAT IT IS HERE!”

20) Budget.gov.au(2021), “Portfolio Budget Statements 2021-22 Budget Related Paper No. 1. 13”

21) 호주의 소득세율은 연소득 18K~45K는 19%, 45K~120K는 32.5%, 120K~180K는 37% 그리고 180K 이상은 45%임

3) MySuper 상품

호주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각 기금에서 설정된 디폴트 투자 상품에 적립금을 투자하여 자동 운영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호주 퇴직 연금 디폴트 투자상품은 전형적인 주식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었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투자수익률이 급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한 1997~2009년 퇴직연금 투자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4.5%), 주식 지수상승률(6.6%)보다 낮은 연 3.04%에 불과하였다. 또한 기존의 디폴트 투자상품은 민간부문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상품 간 비교가 어렵고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2013년 호주 정부는 투자전략 및 수수료를 단순화한 저비용 구조의 새로운 디폴트 투자상품인 MySuper 투자상품(이하 'MySuper 상품'이라 함)을 도입하였다. 2014년 1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용자 기여금은 각 기금에서 디폴트 투자상품으로 설정된 MySuper 상품에만 자동 투자되며, 기존 디폴트 투자상품에 남아있는 자산은 2017년 7월부터 MySuper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기존 디폴트 투자상품과 달리 MySuper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APRA가 제시한 최소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최소 요건은 ① 단일 상품으로 분산투자 전략 충족, ② 관리비, 가입비, 탈퇴비 등 수수료에 대한 제한, ③ 투자전략, 목표 및 과거 수익률, 위험률, 수수료 등 정보에 관한 표준화된 공시체계, ④ 적용 제외 방식으로 사망보험과 영구장해보험 제공이 있다.²²⁾ APRA는 MySuper 상품 인가 요건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MySuper 상품의 핵심 정보('MySuper Product Dashboard')를 공시하도록 요구했다.²³⁾ 퇴직연금 사업자는 MySuper 상품의 핵심 정보를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 정보 공시 내용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개 항목인 ① 목표 수익률, ② 실제 수익률, ③ 목표와 실제 수익률 간 비교, ④ 투자위험 수준, 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에 관한 설명이 있다.²⁴⁾ 또한 APRA는 투자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가입자가 MySuper 상품을 쉽게 비교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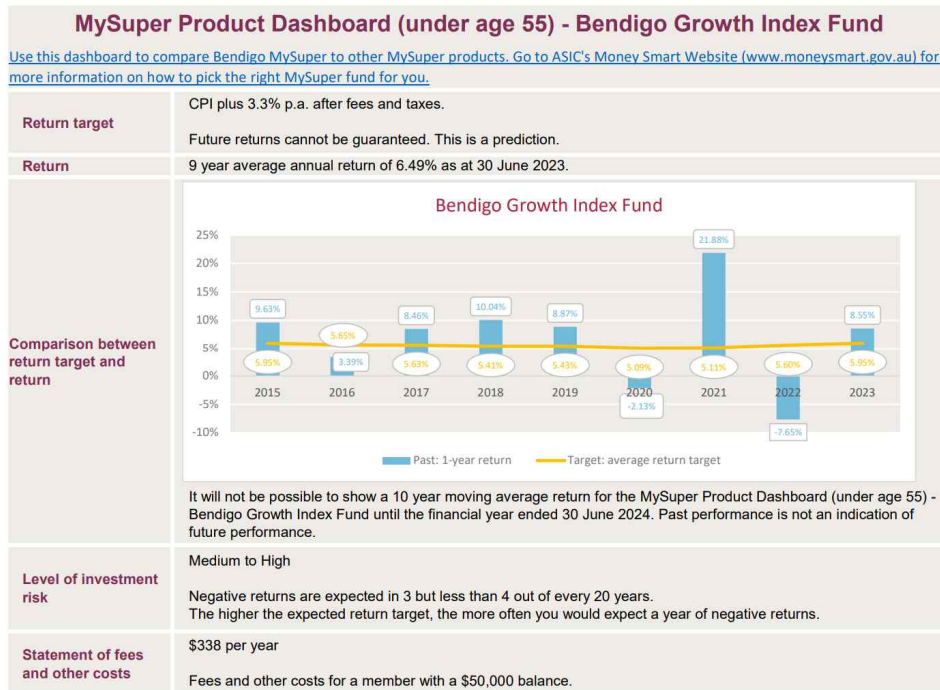
22) The Treasury(2011), MySuper working group, "Defining MySuper"

23) APRA, SRS 700.0 Product Dashboard

24) 목표 수익률은 MySuper 상품이 설정한 장래 10년 동안 달성하는 수익률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CPI), 수수료 및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률을 의미함. 실제 수익률은 MySuper 상품이 실제 달성한 과거 10년(10년 미만 시 전체 투자 기간) 성과이며, MySuper 상품에만 연평균 50,000AUD를 투자하는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순수익률을 의미함. 목표와 실제 수익률 간 비교는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방식을 의미하며, 목표와 실제 수익률에 관한 이동 평균값은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선 그래프로 표현해야 함. 투자위험 수준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투자 기간 20년 동안 손실이 발생하는 연도 수(횟수)를 의미함. 마지막 항목인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MySuper 상품에 관한 투자, 운용 및 자문 수수료를 의미함

수 있도록 핵심 정보의 공시 양식도 표준화하여 제시했다. 이상에서 설명했듯이 APRA는 MySuper 상품별 핵심 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공시함으로써 가입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보장하고 상품 제공자 간의 경쟁 강화와 투자수익률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그림 III-4〉 MySuper 상품 공시 사례(2022년)



주: 상기 그림은 Bendigo Superannuation의 MySuper 상품(지수연동형 펀드)이며, 자세한 설명 내용은 아래 자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자료: Bendigo Superannuation(2023), “MySuper Product Dashboard(under age 55) - Bendigo Growth Index Fund”

2019년 11월부터 APRA는 MySuper 상품의 투명성 제고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MySuper 상품의 히트맵(‘MySuper Heatmap’)을 매년 발표한다.²⁵⁾ 히트맵은 투자성과, 수수료와 비용, 운용결과의 지속가능성²⁶⁾을 평가하여 그라데이션 색상을 이용하

25) APRA(2019), “APRA unveils MySuper heatmap”; “Superannuation heatmaps”

26) 투자성과는 MySuper 상품의 포트폴리오가 일반 펀드인 경우 3년, 5년, 8년 운용기간의 투자수익률, 포트폴리오가 분산된 라이프사이클 펀드인 경우 각 라이프사이클 단계의 투자수익률을 의미함. 수수료와 비용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립금이 1만 AUD, 2.5만 AUD, 5만 AUD, 10만 AUD의 대표 계좌의 관리비 및 총 비용(수수료와 비용 포함)을 의미함. 운용결과의 지속가능성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성과(투자성과, 수수료와 비용)를 미래까지 유지하고 개선이 필요한 운용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MySuper 상품의 3년 동안의 적립금 증가율, 현금흐름비용, 롤 오버 비율을 포함함(APRA(2022), “Methodology Paper-MySuper Heatmap”)

고 항목별로 MySuper 상품의 '성적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투자성과, 수수료와 비용이 관련 벤치마킹 이하 수준을 기록한 MySuper 상품들은 연한 노란색에서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또한 APRA는 이용자가 히트맵을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화형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 이용자는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항목(투자성과, 수수료와 비용, 운용의 지속가능성 등)별 MySuper 상품의 '성적표'를 열람할 수 있다.²⁷⁾ APRA는 2019년 히트맵 발표 이후 MySuper 상품의 수수료 수준이 하락했으며 22개 MySuper 상품이 합병되었거나 운영 종료됐다고 발표했다.²⁸⁾

〈그림 III-5〉 MySuper 상품의 히트맵

MySuper Product Heatmap								
MySuper product name	Investment performance		Fees and costs				Sustainability of member outcomes	
	6 year Net Investment Return (NIR) p.a.	6 year NIR relative to Simple Reference Portfolio p.a.	Administration fees disclosed (\$10,000 account balance)	Administration fees disclosed (\$50,000 account balance)	Total fees disclosed (\$10,000 account balance)	Total fees disclosed (\$50,000 account balance)	RSE Adjusted Total Accounts Growth Rate (3 year average)	RSE Net Cash Flow Ratio (3 year average)
MySuper A							-3.00%	-8.00%
MySuper B	7.30%	1.00%	0.95%	0.35%	1.45%	0.85%	0.00%	4.00%
MySuper C	7.00%	-0.60%	1.30%	0.65%	2.00%	1.35%	-3.00%	1.50%
MySuper D	6.00%	-0.15%	0.50%	0.10%	1.40%	1.00%	1.00%	4.00%
MySuper E	7.90%	2.00%	1.10%	0.50%	1.50%	0.90%	5.00%	-15.00%
MySuper F	9.00%	0.10%	1.30%	0.80%	1.65%	1.15%	-2.00%	3.00%
MySuper G	7.80%	0.35%	1.10%	0.35%	1.90%	1.15%	8.00%	5.00%
MySuper H	8.20%	1.00%	0.90%	0.25%	1.70%	1.05%	10.00%	9.00%
MySuper I	7.70%	0.20%	1.00%	0.40%	1.70%	1.10%	9.00%	8.00%

주: 상기 그림은 APRA가 게시하는 MySuper 상품의 투자성과, 수수료와 비용, 운용결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히트맵이며, 그라데이션 색상으로 표기된 경우 해당 평가대상이 관련 벤치마킹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을 의미함(색상이 진할수록 평가 결과가 나쁨을 의미함)

자료: APRA, "About the MySuper Product Heatmap"

호주 퇴직연금 기금(사업자)은 가입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지만, 대부분 가입자는 적극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지 않고 MySuper 상품에 투자한다. MySuper 상품 개수는 2017년 109개에서 2021년 81개까지 감소했지만, MySuper 상품의 적립금은 2017년 5,870억 AUD에서 9,020억 AUD까지 증가하고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27) APRA(2023), "MySuper Heatmap"

28) APRA(2021), "APRA publishes MySuper and Choice Heatmaps"

이 2017년 36.3%에서 2021년 39.8%까지 상승했다. 아울러 MySuper 상품을 선택한 가입자 계좌가 전체 퇴직연금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8.6%에서 2021년 66.8%로 상승했는데, 이는 MySuper 상품의 적립금 비중(39.8%)의 약 1.7배 수준이다. 적립금 규모가 큰 계좌의 경우 직접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소액인 경우 MySuper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II-23〉 MySuper 상품 시장의 변화 추이

(단위: 개, 십억 AUD, 천 개, AUD,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MySuper	상품 개수	109	104	97	88	81
	적립금(A)	587	670	747	737	902
	계좌 개수(B)	15,503	15,520	15,193	14,555	14,229
	평균 적립금	36,862	41,735	47,321	48,457	59,768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C)	1,618	1,774	1,925	1,931	2,267
	계좌 개수(D)	26,448	25,813	25,527	22,468	21,307
	평균 적립금	59,000	66,000	72,000	82,000	102,000
MySuper 비중	적립금 비중(A/C)	36.3	37.8	38.8	38.2	39.8
	계좌 비중(B/D)	58.6	60.1	59.5	64.8	66.8

주: 통계치는 매년 6월 말 기준으로 집계됨.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계좌 개수, 평균 적립금은 APRA의 감독을 받는 퇴직연금 사업자(기업형기금, 산업형기금, 공적기금, 소매형기금 등)를 대상으로 집계된 수치이므로 ATO의 감독을 받는 자기관리기금 등을 포함하지 않음

자료: APRA(2023),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June 2015 to June 2022 – superannuation entities"; APRA(2023),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June 2015 to June 2022 – MySuper products"

2021년 가입자 연령별로 보면 투자 경험이 적고 1인당 평균 적립금의 규모가 소액인 20~30대의 보유 계좌 개수는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1인당 평균 적립금의 규모가 큰 40대 이상의 보유 계좌 개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성별로 보면 대체로 여성보다 남성의 보유 계좌 개수 및 1인당 평균 적립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연령별·성별 MySuper 상품 투자 현황(2021년 6월)

(단위: 천 개, AUD)

연령	계좌 개수			평균 적립금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소계
25세 미만	1,108	1,183	2,300	4,932	5,254	5,088
25~34세	1,737	1,881	3,634	25,324	24,715	24,951
35~44세	1,585	1,605	3,200	57,018	67,295	62,076
45~49세	690	689	1,382	77,634	98,372	87,884
50~54세	654	651	1,307	90,389	116,179	103,134
55~59세	535	539	1,075	105,658	135,423	120,478
60~64세	404	417	822	104,480	128,438	116,562
65~69세	210	227	437	94,279	101,559	97,980
70~74세	89	101	190	78,292	83,061	80,758
75~84세	38	50	88	75,775	86,784	81,974
85세 이상	2	3	4	58,347	64,394	61,947
전체	7,052	7,346	14,440	54,024	63,515	58,742

주: 가입자 중 성별, 나이를 밝히지 않는 가입자가 존재하므로 여성과 남성을 합한 수치는 소계나 전체 통계치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APRA(2023),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June 2015 to June 2022 - MySuper products"

2020년을 제외한 최근 5년 동안 MySuper 상품의 순기여금, 순투자수익, 순증가금액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부터 순투자수익이 순기여금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호주 퇴직연금인 MySuper 상품을 활용하여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5〉 MySuper 운영성과 변화 추이

(단위: 백만 AUD)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순기여금	81,364	34,251	40,359	34,241	35,333
순투자수익	55,485	59,349	52,083	-4,782	139,553
영업수익	144	159	153	154	149
순증가금액	118,891	77,737	77,737	-9,980	164,304
누적 적립금	587,278	747,244	747,244	737,264	901,568

주: 통계치는 매년 6월 말 기준으로 집계됨. 순증가금액은 당기 연도 총자산의 1년간 증가금액을 의미함
 자료: APRA(2023),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June 2015 to June 2022 - MySuper products"

호주 정부가 MySuper 상품을 도입하는 목적 중 하나는 수수료를 제한함으로써 가입자의 순수익률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MySuper 상품 도입 이후 2014년 가입자 1인당 정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수수료 수준은 2011년 63 AUD에서 70 AUD로 상승했지만, 적립금 대비 수수료 비율 수준은 2011년 0.92%에서 0.80%로 하락했다.

〈표 III-26〉 MySuper 상품 수수료 변화

(단위: AUD, %)

구분	1인당 정액 수수료	적립금 대비 수수료 비율	가입자 적립금 규모당 수수료		
			5,000	20,000	50,000
MySuper 상품 도입 전 (2011년 기준)	63	0.92	109	248	525
MySuper 상품 도입 후 (2014년 기준)	70	0.80	108	222	450

자료: Rice Warner(2014); 이경희(2018)

4) 세제혜택

퇴직연금 적립단계에서 기여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Exempt: E) 혜택을 통해 적립금 유지를 장려하고 연금 수령 시 과세(Taxation: T)하는 한국과 달리 호주는 적립단계에서 기여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T)하고 수령 시 인출단계에서 수령금에 대해 비과세(E) 하고 있다. 다만, 적립단계에서 과세를 한다고 하나 호주 정부는 가입자의 자발적

기여금에 대해 세전 기여 및 세후 기여를 구분하여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① 가입자가 사용자 법정기여금 외에 자신의 세전소득으로 퇴직연금에 추가 기여할 경우, 호주 정부는 한도 내의 가입자 기여금과 사용자의 법정기여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15% 세율로 과세하며 한도 외의 가입자 기여금을 과세소득으로 한계세율(최고 45%)을 적용한다.²⁹⁾ 가입자 세전소득의 기여 한도는 2021년 기준 27,500AUD이고,³⁰⁾ ② 가입자가 자신의 세후 소득으로 퇴직연금에 추가 기여할 경우에 호주 정부는 한도 내의 가입자 기여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한도 외의 가입자 기여금에 대해 47%의 세율로 과세한다. 가입자의 세후소득 기여 한도는 2021년 기준 110,000AUD이다.³¹⁾ 한편, 호주 퇴직연금 기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일률적으로 15%의 세율로 과세된다.

호주 퇴직연금제도의 인출단계는 MySuper 상품을 도입하는 적립단계와 달리 디폴트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방식은 수령방식과 연령에 따라 다르다. 법정 최저 인출 연령 이전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22% 및 한계세율 중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법정 최저 인출 연령 이후, 59세 이전에 적립금 인출 시 비과세 한도³²⁾는 과세되지 않으며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만은 과세된다(일시금 시 17%, 정기인출³³⁾ 시 한계세율). 반면 60세 이후 인출 시 일시금과 정기인출에 대해서는 모두 비과세이다.

29) 2021년 이전에 가입자가 세전소득으로 한도를 초과하여 퇴직연금에 기여할 경우 호주 국세청은 초과 기여금에 대해 페널티(Excess Concessional Contributions; ECC)를 부과하였으며, 해당 페널티는 초과 기여금의 납세 지연으로 발생한 지연 이자금임(AT0(2023), “Excess concessional contribution charge”)

30) 가입자의 세전소득 기여 한도는 연도 및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017년 이전에는 49세 미만 가입자의 기여 한도는 30,000AUD이고 49세 이상 가입자의 기여한도는 35,000AUD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가입자의 기여 한도는 25,000AUD임(AT0(2023), “Concessional contributions and contribution caps”)

31) 가입자 세전소득의 기여한도는 2013년 이전 150,000AUD, 2014~2016년 180,000AUD, 2017~2020년 100,000AUD임(AT0(2023),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and contribution caps”)

32) 2020년 기준 적립금 인출 시의 비과세 한도는 225,000AUD임(moneysmart, “Tax and super”)

33) 정기인출은 계좌인출연금(Account-Based Pension), 종신연금, 이행연금(Transition to Retirement Pension) 등 상품을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인출하는 방식을 의미함. 계좌인출연금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법정 최저인출연령(55~60세)부터 은퇴 결정 시 개설하는 금융투자 계좌이며, 가입자가 동 계좌 적립금에 대해 신탁자에게 투자명령을 내리고 지정한 비율로 적립금이 고갈될 때까지 주기로 인출할 수 있음. 이행연금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법정 최저인출연령(55~60)세부터 개설하는 금융투자 계좌이며 주로 은퇴하지 않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용하는 계좌임(moneysmart, “Transition to retirement”; “Account-based pensions”; “Retirement”)

〈표 III-27〉 호주 퇴직연금 기여금 납부, 자산운용, 적립금 인출 시의 과세방식

구분		세부 내용
기여금 납부 단계	세전소득 기여 시	• 추가 기여금 납부 한도 이하: 가입자 기여금과 사용자 기여금에 대해 15%로 과세 • 추가 기여금 납부 한도 초과: 가입자 기여금에 대해 한계세율(최고 45%)로 과세
	세후소득 기여 시	• 가입자의 기여금 납부 한도 이하: 0% • 가입자의 기여금 납부 한도 초과: 47%로 과세
자산운용 단계		• 운용수익에 대해 15%로 과세
적립금 인출 단계	법정 최저 인출 연령 이전	• 일시금 인출 시: 전액 22% 및 한계세율 중 낮은 세율로 과세
	법정 최저 인출 연령~5 9세	• 일시금 인출 시: 비과세 한도 이하: 0%, 비과세 한도 초과: 17%로 과세 • 정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 0%, 비과세 한도 초과: 한계세율로 과세
	60세 이후	비과세

자료: ATO(2023), "Concessional contributions and contribution caps";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and contribution caps"; moneysmart, "Tax and super"

라. 슈퍼애뉴에이션의 성과와 한계

1) 성장

2020년 호주 내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약 1,700만 명으로, 이 수치는 근로자 수(1,291만 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여러 개의 퇴직연금 계좌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호주 국민 중 2020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하나만 소유한 사람은 약 1,260만 명이고, 두 개 이상의 퇴직연금 계좌를 가진 사람은 약 450만 명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호주 퇴직연금 계좌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0년 퇴직연금 계좌 수는 2,440만 개로 2016년에 비해 약 460만 개가 줄어들었다.

〈표 Ⅲ-28〉 호주 퇴직연금 계좌 보유 수별 가입자 수 및 계좌 수 변화 추이(2020년)

(단위: 만 명, 만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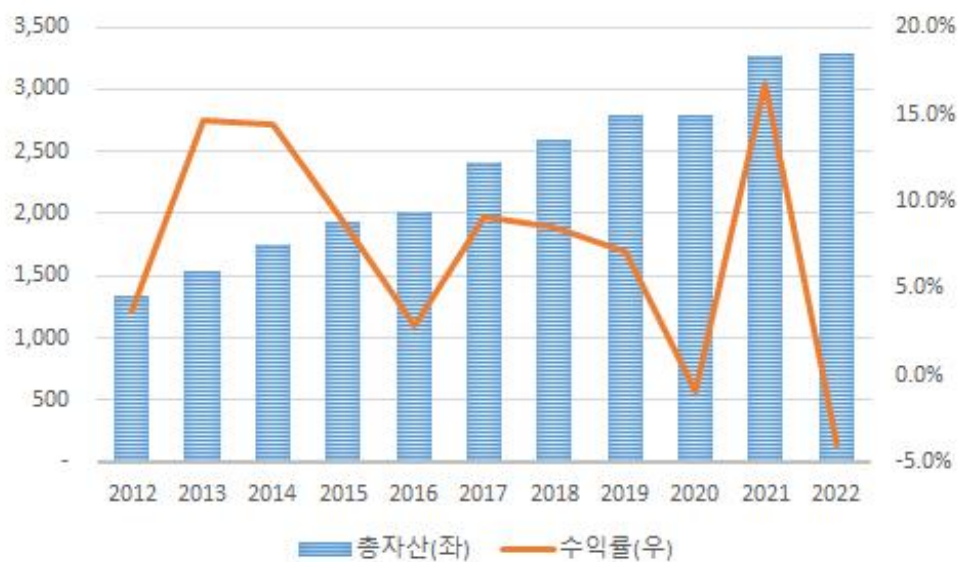
퇴직연금 계좌 보유 수	가입자 수	계좌 수
1개	1,260	1,260
2개	340	680
3개	80	250
4개 및 그 이상	30	250
합계	1,700	2,440

자료: ASFA(2021), "Developments in the number and cost of multiple superannuation accounts"

2021년 호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31조 AUD(약 2,913조 원)로 2017년 2.47조 AUD(약 2,174조 원) 대비 33.8% 증가했다.³⁴⁾

〈그림 Ⅲ-6〉 호주 퇴직연금 기금 총자산 및 성장률 추이

(단위: 십억 A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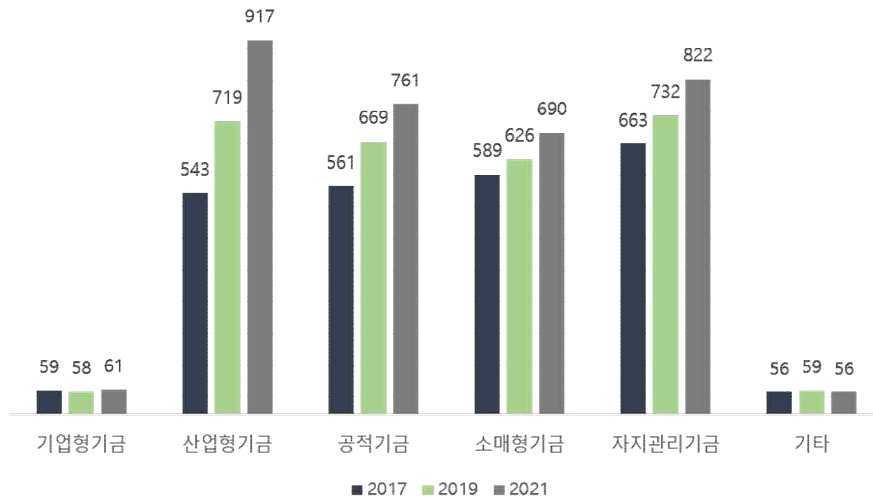
자료: APRA(2023), Annual Super Bulletin

34) 2021년 한국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기업의 퇴직연금 신규 도입 증가로 296조 원으로 2017년 168조 원에 비해 76.2% 증가함(고용노동부(2021; 2022), 퇴직연금통계)

2021년에는 산업형기금이 자기관리기금을 능가하여 가장 많은 자금을 관리한 기금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체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비중도 2017년의 22.0%에서 27.7%로 확대됐다.

〈그림 Ⅲ-7〉 호주 퇴직연금 기금 유형별 적립금 변화 추이

(단위: 십억 AUD)



주: 기타 퇴직연금은 APRA의 감독을 받지 않는 공적기금, 보험펀드, 소규모 APRA 기금을 포함함
 자료: ATO(2021), "SMSF overview data tables 2019-20"

호주 전체 퇴직연금 기금의 단기(1년) 투자수익률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 마이너스(-0.9%)를 기록했으나 2021년에 강한 반등세(16.8%)를 보였다. 중장기(5년 및 10년 평균수익률) 투자수익률은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에 축소(5.3%, 6.9%)됐지만 2021년에 2020년 이전과 비슷한 수준(8.0%, 7.7%)으로 회복됐다.³⁵⁾ 2021년까지의 최근 5년 및 10년 평균수익률은 산업형기금(8.9%, 8.6%), 공적기금(8.0%, 8.1%), 기업형기금(7.5%, 7.5%), 소매형기금(7.2%, 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형기금의 중장기 투자수익률이 다른 퇴직연금 기금들에 비해 높은 것은 기금 규모가 클수록 자산 배분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투자수익률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5) 한국 퇴직연금(2021년 기준, 1년 수익률: 2.0%, 5년 수익률: 1.96%, 10년 수익률: 2.39%)과는 단순 비교로도 매우 큰 차이가 확인되고 있음(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 4. 17), "퇴직연금 1년만에 40조 원 증가, 총 적립금 295.6조 원 달성")

〈표 Ⅲ-29〉 호주 APRA의 감독을 받는 퇴직연금 기금의 유형별 투자수익률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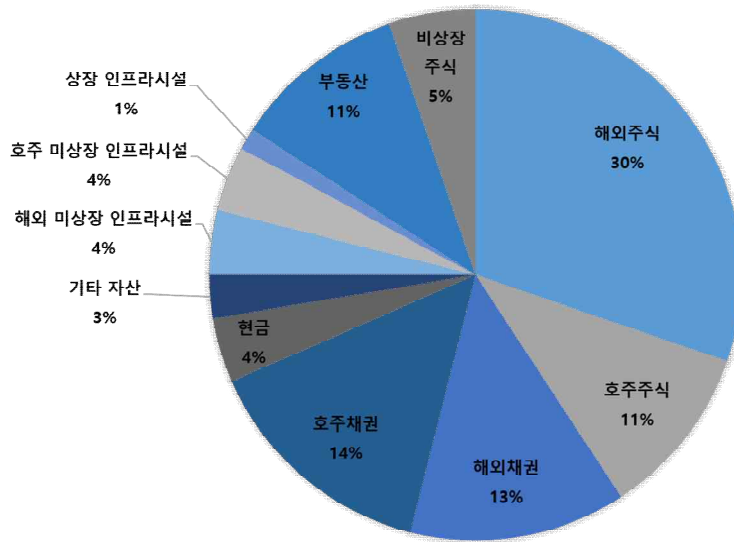
(단위: 십억 AUD,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업형기금	기금당 순자산	2.2	2.8	3.1	3.9	4.1
	1년 수익률	9.2	7.6	6.0	0.9	14.2
	5년 평균수익률	9.3	9.0	6.7	5.2	7.5
	10년 평균수익률	4.5	5.8	8.0	7.0	7.5
산업형기금	기금당 순자산	11.7	14.3	18.0	21.1	22.7
	1년 수익률	10.5	9.9	7.5	-0.7	17.8
	5년 평균수익률	10.2	9.3	8.3	6.2	8.9
	10년 평균수익률	4.9	6.5	8.7	7.7	8.6
공적기금	기금당 순자산	9.9	15.6	16.8	19.1	19.9
	1년 수익률	9.5	8.4	7.5	0.0	15.2
	5년 평균수익률	9.8	8.6	7.7	5.7	8.0
	10년 평균수익률	4.8	6.3	8.5	7.5	8.1
소매형기금	기금당 순자산	4.7	5.3	6.2	6.7	6.8
	1년 수익률	7.8	7.4	6.5	-2.1	17.1
	5년 평균수익률	8.1	7.0	6.2	4.2	7.2
	10년 평균수익률	3.1	4.9	6.9	5.8	6.8
전체	1년 수익률	9.1	8.5	7.1	-0.9	16.8
	5년 평균수익률	9.2	8.2	7.3	5.3	8.0
	10년 평균수익률	4.1	5.8	7.9	6.9	7.7

자료: APRA(2023),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June 2015 to June 2021 superannuation entities"

2021년 호주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해외주식 28%, 호주주식 23%, 호주채권 10%, 해외채권 8%, 부동산 8%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되고 있다. 호주의 퇴직연금 적립금 구성은 주식과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에 70% 이상이 투자되어 있으며, 부동산 및 인프라 시설과 같은 비금융자산은 전체의 15%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리금보장형 투자 비중은 현금 등 전체의 11% 수준으로 원리금 보장형 투자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그림 III-8〉 호주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배분 비중(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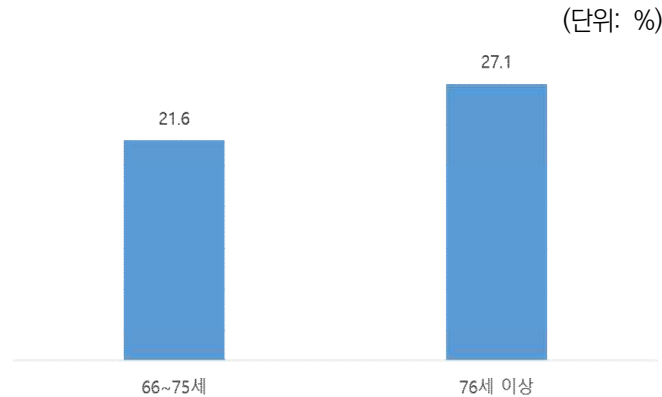


자료: APRA(2023), "Quarterly superannuation performance statistics – September 2004 to March 2022"

2) 성과

호주 노령연금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최대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는 등 노후소득원으로로서의 기능보다는 빈곤 구제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슈퍼애뉴에이션은 호주 국민이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슈퍼애뉴에이션이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에 미친 영향은 제도의 영향을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노인 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슈퍼애뉴에이션에 충분히 가입하지 못한 76세 이상 계층 빈곤율은 27.1%로 호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22.6%에 비해 높는데 반해 슈퍼애뉴에이션에 가입할 수 있었던 66~75세 은퇴자들의 빈곤율은 21.6%로 슈퍼애뉴에이션이 노인 빈곤율 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III-9〉 호주 연령대별 빈곤율



자료: OECD Library

자산운용 및 재무적으로는 최근 5년 동안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의 순기여금, 순투자수익, 순증가금액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을 제외하고 적립금 순증가금액이 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확충에 있어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III-30〉 퇴직연금 운영성과 변화 추이

(단위: 백만 AUD)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순기여금	44,175	21,257	22,916	10,614	23,589
순투자수익	205,258	187,505	182,932	1,860	472,089
영업수익	850	581	528	556	769
순증가금액	397,620	191,600	191,810	7,120	474,784
누적 적립금	2,407,753	2,599,353	2,791,162	2,798,282	3,274,312
인출금	116,079	104,859	110,256	131,698	126,340
일시금	45,189	43,936	48,214	71,247	69,598
정기인출금	70,714	60,789	61,905	60,343	56,624

주: 통계치는 매년 6월 말 기준으로 집계됨. 순증가금액은 당기 연도 총자산의 1년간 증가금액을 의미함
 자료: APRA(2023),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June 2015 to June 2022"

슈퍼애뉴에이션이 정착되면서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은 사적연금 도입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글로벌 연금 지수(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MCGPI)³⁶⁾에서 조사된 44개 국가의 연금제도 가운데 호주는 2년 연속 종합 6위를 차지했다. 상위 국가인 아이슬란드(1위), 네덜란드(2위), 덴마크(3위), 이스라엘(4위), 호주(6위)의 공통점은 퇴직연금 가입이 (준)의무화되어 있으며,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고 노후소득보장에서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⁷⁾

〈표 Ⅲ-31〉 2022년 글로벌 연금 지수(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구분	국가	등급	총 점수	하위 점수		
				급여수준의 적정성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도의 공정성
1	아이슬란드	A	84.7	85.8	83.8	84.4
2	네덜란드	A	84.6	84.9	91.9	87.8
3	덴마크	A	82.0	81.4	82.5	82.1
4	이스라엘	B+	79.8	75.7	81.9	83.2
5	핀란드	B+	77.2	77.5	65.3	93.3
6	호주	B+	76.8	70.2	77.2	86.8
7	노르웨이	B+	75.3	79.0	60.4	90.3
8	스웨덴	B	74.6	70.6	75.7	79.5
9	싱가포르	B	74.1	77.3	65.4	81.0
10	영국	B	73.7	76.5	63.9	83.0
20	미국	C+	63.9	67.5	61.2	61.7
35	일본	C	54.5	58.0	44.5	63.0
36	중국	C	54.5	64.4	39.3	60.0
38	한국	C	51.1	40.1	54.9	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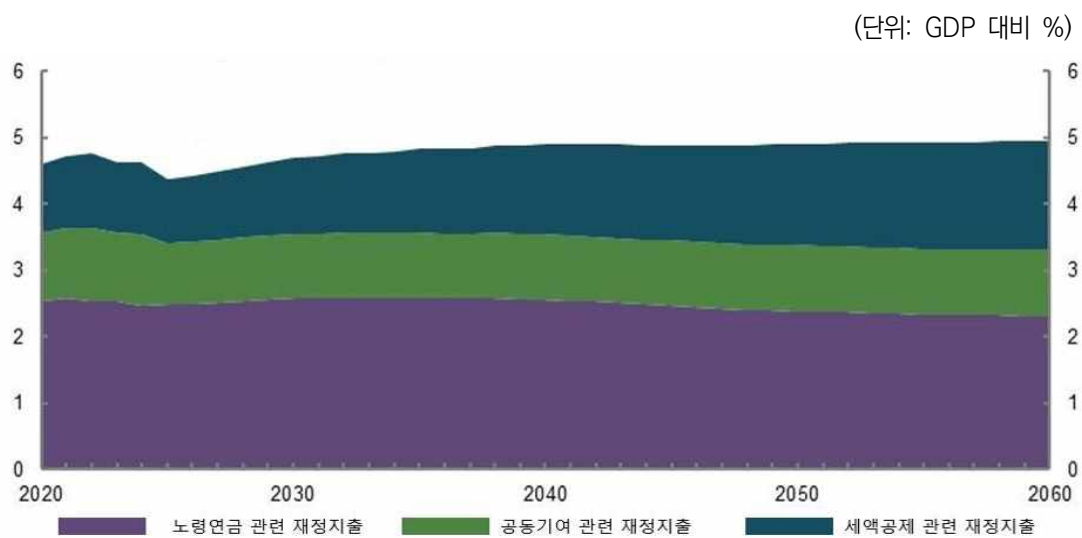
자료: Mercer(2022), "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2022 calls for a shift in super mindset"

36) MCGPI는 전 세계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44개 국가의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해 각 국가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발견하여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은퇴 후 소득을 제공하는 데 개선 영역을 제시함. 동 지수가 각 국가 연금제도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지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급여수준의 적정성(Adequacy), 제도의 공정성(Integrity)임

37) Mercer(2022), "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2022 calls for a shift in super mindset"

이러한 슈퍼애뉴에이션의 성장은 정부 재정으로 노후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I-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호주 정부는 노령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의 규모는 2060년까지 2%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호주 재무부는 연금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노령연금과 연금과 관련한 세액공제 및 공동기여 등을 모두 합친 연금 관련 재정지출 역시 2060년 GDP의 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III-10〉 호주 정부의 노후소득 관련 재정지출 추계



자료: Department of Treasury(2020)

3) 한계

호주 퇴직연금제도의 인출단계는 MySuper 상품을 도입하는 적립단계와 달리 디폴트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호주 시장에는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연금상품이 거의 없다. 적절한 과세방식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일시금 수령을 억제하고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지만, 호주 정부는 60세 이후 가입자의 적립금 인출(일시금과 정기인출 포함)에 대해 모두 과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가입자(2021년 적립금 기준, 일시금 인출 비율 55.1%)가 생각보다 오래 생존할 경우 장수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다. 일시금 인출로 인한 장수리스크 대비 부족은 호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높은 그룹에 속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³⁸⁾ 이에 대응하여 현재 호주 정부는 슈퍼애뉴

에이션 가입자의 정기인출 유도를 위해 일련의 계획을 발표했다.³⁹⁾

호주 정부는 2003년부터 슈퍼애뉴에이션 중저소득층 가입자의 자발적 기여금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공동기여제도를 실시했다. 2022년 기준 과세소득 42,000AUD 미만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최대 5,000AUD까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03~2022년 호주 정부는 중저소득층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100억 AUD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22~2025년 3.65억 AUD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동기여제도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 제도는 중저소득층의 자발적 기여금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며, 동 제도에 사용되는 국민 세금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 가입자에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3. 소결

앞서 살펴본 두 나라는 사적연금을 활용해 국민의 노후소득원을 확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호주의 경우 빈곤 구제 성격의 노령연금 이외에는 국가에서 규율하는 연금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노후 빈곤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인 슈퍼애뉴에이션을 도입하였다. 스웨덴은 1990년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노인 부양비는 높아졌으며, 경제성장률 역시 정체되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으며 단행한 연금개혁 과정에서 NDC제도로 운영되는 공적연금과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가 강제로 가입하게 되는 사적연금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이 도입되던 1980년대에 비해 기대수명, 인구구조 그리고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거의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스웨덴과 유사한 상황이며,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점에서는 호주의 상황과 유사하다.

두 나라에서 사적연금을 활용한 방식들은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활용을 고민하는 우리나라

38) Pension at a glance 2021에 의하면 호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3.7%(2018년 기준)로 높음

39) Parliament of Australia, "Superannuation after 30 years"

40) The Conversation(2022), "Super co-contribution has cost \$10 billion to help the wrong Australians - so let's scrap it"

라에 시사점을 준다.

첫째, 연금개혁 혹은 사적연금 활성화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수반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최저보증연금을 통해 충분한 연금을 마련하지 못한 계층에 대한 최소수준의 생활을 보장하였다. 호주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은퇴 이전에 사적연금 적립금의 누수를 막았다. 스웨덴의 경우 공적연금(IP)과 마찬가지로 강제사적연금(PP)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 인출 조건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며, 은퇴 연령(60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납입, 운용 그리고 수령 모든 단계에서 과세를 받게 되어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우리나라 역시 퇴직연금 및 사적연금에 중도 인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스웨덴의 프리미엄연금과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 모두 자산운용 수익률이 매우 높다. 스웨덴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민간펀드 운용사들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호주 역시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이를 통한 기금 간의 경쟁유도 등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 및 금융상품 제조사의 역할 강화 및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의 경우 엄청난 적립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노인 빈곤율은 22%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다. 이는 호주의 경우 연금화 수령을 강제하지 않아 장수위험을 분산(Hedge)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연금화 수령비율이 매우 낮고, 노인 빈곤율은 매우 높다. 따라서 적립된 자산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IV

사적연금의 역할

본 장에서는 공적, 사적연금을 활용하여 OECD 평균 수준(약 60%)과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소득대체율을 추정한다.

1. 분석가정 및 분석방법

노후소득보장에 필요한 공·사적연금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계좌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행하였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계좌의 기본적 제도 특성을 분석모형에 반영하였으며, 분석의 단순화, 설명의 효과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하였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 원⁴¹⁾을 지급하는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다만, 제도적 특성 중 현행 국민연금 A급여(균등부분)와 연동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가입자는 기초연금 급여가 감액되지만 이들의 비율은 7.6%⁴²⁾ 수준으로 낮아 연계감액은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고 소득계층은 변화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므로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최종 40년 가입 시 40%이고, 보험료율은 9%이므로 이러한 현행 제도의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국민연금 급여액 결정에 있어 소득 외 가입기간이 주요 요소가 되는데, 가입기간은 기본적으로 40년, 그리고 현실을 고려하여 25년의 두 기간을 가정하였다. 단, 가입자는 가입기간 동안 납부 예외와 체납 없이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제도적용 시점별 소득대체율이

41) 2023년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월 32만 원이지만 이는 '21년 30만 원에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상승한 것이므로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30만 원으로 설정함

42) 2022년 12월 기초연금수급자 623.9만 명 중 7.6%인 47.6만 명이 연계감액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감액금액은 7.6만원수준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⁴³⁾ 국민연금제도 도입 시점인 1988년을 고려하여 1990년, 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99년을 고려하여 2000년, 소득대체율이 40%로 완성되는 시점인 2028년을 고려하여 2030년을 가입 시점으로 분석하였다. 단,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더 이상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⁴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추가적 감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금수급기간은 2022년 기준 65세의 기대여명인 21.5세를 고려하여 2030년에 수급을 개시하는 경우(1990년 가입자) 23년을 기본으로 하였다. 또한 기대여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급기간이 24~26년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고려하였다.⁴⁵⁾ 퇴직연금은 상용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보험료율 8.3% (연소득 대비 비율), 운용수익률 3%를 가정한다. 적립금액은 수급 시점까지 중도 인출, 이직 시 해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수급 시점에 모두 종신연금화되는 것을 가정한다. 퇴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은 연금계좌(개인형 IRP+세제적격 연금저축)로 상정하였다. 연금계좌(개인형 IRP+연금저축)의 보험료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분석의 편의상 국세통계연보에서 조사된 8.0%(연소득 대비 비율)로 한다.⁴⁶⁾ 한편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운용수익률 3%, 적립금액은 수급 시점까지 중도 인출 및 해지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수급 시점에 모두 종신연금화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거시경제와 관련된 변수들로는 임금상승률 3%, 물가상승률 2%를 적용하되, 할인율은 투자수익률과 동일하게 3%로 가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연금소득 이외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표 IV-1〉 참조).

4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1998년 70%, 1999~2007년 60%, 2008~2028년 50~40%(연간 0.5% 감소) 되었음

44) 국민연금연금특위 자문위원회 등의 논의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는 실질 수준을 고려하면 충분히 낮다는 점에서 추가적 감액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45) 우리나라 65세 기대여명은 1970년부터 10년마다 1.7세 증가하여 왔으며, 이를 반영함

46) 국세통계연보 분석에 의하면 2013~2021년 동안 연금계좌(개인형 IRP+연금저축) 가입률 14.2%, 보험료율(1인당) 8.1%, 연간 납부액(1인당) 285만 원으로 분석됨

〈표 IV-1〉 제도 및 경제변수 가정

구분		가정값		비고	
		기본(안)	민감도분석(안)		
제 도 변 수	기초연금		월 30만 원 (물가 연동)	2025년 이후 월 40만 원(물가 연동)	대상자: 노인의 70%(현행)
	국민연금	A값	268만 원	좌동	2022년 기준 A값 (3년 평균소득월액)
		가입 시점	2025년	1999년(전국민), 2033 년	가입 후 납부 예외, 체납기간 없음
		가입기간	25년	→30년→35년→40년	
		수급기간 (기대여명)	23년	→24년→25년→26년	2020년 65세 기대여명: 21.5세(1970년부터 10년 마다 1.7세 증가)
	퇴직연금 ¹⁾	보험료율	8.3%	좌동	대상자: 상용근로자
		수익률	3.0% (DC형)	4.0%→5.0%→6.0%	
		가입, 수급 시점	가입 시점, 가입기간, 수급기간은 국민연금가정과 동일적용		
	개인형 연금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13.2% (16.5%)	-	대상자: 경활자(IRP), 일반국민
		보험료율	8.0%	좌동	
		수익률	(퇴직연금과 동일)		
		가입, 수급 시점	현실적 납부기간을 고려하여 10년 가입, 소득대체율 산출을 위해 연금형태로 수령하되 수급기간은 국민연금가정과 동일		
경 제 변 수	임금상승률		3.0%	→4.0%→5.0%→6.0%	제5차 국민연금재정추계의 가정을 참조
	물가상승률		2.0%	→1.5%→1.0%→동결	
	할인율		3.0%	→4.0%→5.0%→6.0%	

주: 1) 퇴직연금은 2005년 말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은 퇴직금이 적용되며, 두 제도는 동일 보험료율이고, 가정상 수익률과 임금상승률이 동일하므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소득대체율 산출에 있어 차이가 없어, 편의상 퇴직연금으로 용어를 통일함

기본 가정하에 소득계층별 효과 분석을 위해 소득계층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정책적 함의를 도출을 위해 소득계층에 따른 최저임금, 국민연금 A값 등 제도적 특성 값을 반영하였다(〈표 IV-2〉 참조).

〈표 IV-2〉 5개 소득계층 구분

소득 등급	월소득액	근거
1 등급	100만 원	2등급의 절반
2 등급	200만 원	2022년 월 최저임금 수준
3 등급	268만 원(300만 원)	2022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4 등급	400만 원	-
5 등급	553만 원(500만 원)	2022년 보험료납입의 소득상한
근로소득 (국세통계)	320만 원	2020년 총급여 기준(국세통계연보, 2021)

2. 분석결과: 소득대체율 추정

가. 기본안: 가입 시점별 소득대체율

앞서 제시한 기본 가정에 따라 수급 시점(가입 시점) 및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개인연금은 임의가입이라는 점에서 기본적 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그 합산액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첫째, 40년 가입기간으로 하되, 수급 시점(가입 시점)이 2030년(1990년)인 초기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살펴본다. 동 집단에서 1990년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평균소득(268만 원)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40년간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기초연금으로부터 11.5%, 국민연금으로부터 53.6% 그리고 퇴직연금으로부터 14.4%로 79.5%의 총소득대체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 집단의 총연금(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수준은 2023년 현재가치로 214만 원(268만 원×79.5%)이 된다는 의미이다.

동 시대에 소득수준이 월 100만 원인 저소득 가입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 30.8%, 국민연금 98.7%, 퇴직연금 14.4%로 총 143.9%이 되고, 이를 연금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144만 원을 수급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평균소득자와 비교할 때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것은 공적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이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수준은 수익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초기 가입자 중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3.1배임에 비해 저소득층인 100만 원 소득자의 수익비는 5.7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월 소득 550만 원인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 39.9%, 퇴직연금 14.4%로 총 54.3%가 되며 연금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299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액 측면에서 가장 수준이 높지만 앞서 언급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낮은 2.3배로 추정된다. 그러나 2.3배도 1배 수준보다 높다는 점에서 후세대 부담에 의한 소득재분배 즉, 세대 간 재분배가 초기 가입자를 중심으로 강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생애기간 대부분 자영업에 종사한 자영업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공적연금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노후소득 수준이 결정된다.

둘째, 40년 가입기간이지만 수급 시점이 뒤로 늦어질수록 소득대체율이 변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급 시점(가입 시점)이 각각 2040년(2000년), 2050년(2010년), 2060년(2020년), 2070년(2030년)인 경우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입시점이 늦어질수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국민연금법 개정 시점인 1998년, 2007년 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기준으로 70%에서 60%, 그리고 50%를 거쳐 40%까지 감소하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설명은 앞 수급 시점(가입 시점) 2030년(1990년)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표 IV-3〉 40년 가입 시 기초·국민·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단위: %)

수급개시 (가입 시점)	연금유형	100만 원	200만 원	268만 원	450만 원	550만 원
2030년 (1990년)	기초연금	30.8	15.4	11.5	-	-
	국민연금	98.7 (5.7)	62.7 (3.6)	53.6 (3.1)	42.8 (2.5)	39.9 (2.3)
	퇴직연금	14.4	14.4	14.4	14.4	14.4
	합계	143.9	92.6	79.5	57.2	54.3
2040년 (2000년)	기초연금	30.8	15.4	11.5	-	-
	국민연금	85.8 (4.9)	54.6 (3.1)	46.6 (2.7)	37.2 (2.1)	34.7 (2.0)
	퇴직연금	14.4	14.4	14.4	14.4	14.4
	합계	131.0	84.4	72.5	51.6	49.1

〈표 IV-3〉 계속

수급개시 (가입 시점)	연금유형	100만 원	200만 원	268만 원	450만 원	550만 원
2050년 (2010년)	기초연금	30.8	15.4	11.5	-	-
	국민연금	77.5	49.3	42.1	33.6	31.3
		(4.5)	(2.8)	(2.4)	(1.9)	(1.8)
	퇴직연금	14.4	14.4	14.4	14.4	14.4
	합계	122.7	79.1	68.0	48.1	45.8
2060년 (2020년)	기초연금	30.8	15.4	11.5	-	-
	국민연금	74.4	47.3	40.5	32.3	30.1
		(4.3)	(2.7)	(2.3)	(1.9)	(1.7)
	퇴직연금	14.4	14.4	14.4	14.4	14.4
	합계	119.6	77.1	66.4	46.7	44.5
2070년 (2030년)	기초연금	30.8	15.4	11.5	-	-
	국민연금	73.6	46.8	40.0	31.9	29.7
		(4.2)	(2.7)	(2.3)	(1.8)	(1.7)
	퇴직연금	14.4	14.4	14.4	14.4	14.4
	합계	118.8	76.6	65.9	46.3	44.2

주: 1) 체납 및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2) 임금상승률, 투자수익률, 할인율은 3%로, 물가상승률은 2%로 가정함
 3) 수급기간은 23년, 2023년 현재로 산출함
 4) () 안은 국민연금 수익비임

우리나라 국민의 실제 근로기간을 고려하면 40년을 가정하는 것은 다소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 근로기간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을 25년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⁴⁷⁾ 이때 앞의 40년 가입기간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수급 시점을 일치하도록 맞추었으므로 가입기간은 다르게 설정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2005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2030년에 퇴직하는 평균소득 수준(월 268만 원)의 근로자의 경우, 기초연금으로부터 11.5%, 국민연금으로부터 29.1% 그리고 퇴직연금으로부터 9%의 소득대체율을 올려 총 49.6%의 노후소득대체율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25년간 가입할 경우 현재가치로 생애 평균소득인 268만 원의 약 50%인 134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같은 방법으로 월 소득이 100만 원인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93.4%로 월 93.4만 원의 연금소

47) 통계청, 2021년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연령은 49.3세였음

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월 소득이 550만 원인 고소득층의 경우 약 30.7%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여 월 168만 원 정도의 연금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찬가지로 25년 가입기간이지만 수급 시점이 뒤로 늦어질수록 소득대체율이 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급 시점(가입 시점)이 각각 2040년(2015년), 2050년(2025년), 2060년(2035년), 2070년(2045년)인 경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와 해석은 유사하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표 IV-4〉 25년 가입 시 기초·국민·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단위: %)

수급개시 (가입 시점)	연금유형	100만 원	200만 원	268만 원	450만 원	550만 원
2030년 (2005년)	기초연금	30.8	15.4	11.5	-	-
	국민연금	53.6	34.1	29.1	23.2	21.7
	퇴직연금	9.0	9.0	9.0	9.0	9.0
	합계	93.4	58.5	49.6	32.3	30.7
2040년 (2015년)	기초연금	30.8	15.4	11.5	-	-
	국민연금	48.1	30.6	26.1	20.9	19.4
	퇴직연금	9.0	9.0	9.0	9.0	9.0
	합계	87.9	55.0	46.6	29.9	28.5
2050년 (2025년)	기초연금	30.8	15.4	11.5	-	-
	국민연금	46.1	29.3	25.1	20.0	18.6
	퇴직연금	9.0	9.0	9.0	9.0	9.0
	합계	85.9	53.7	45.6	29.0	27.7
2060년 (2035년)	기초연금	30.8	15.4	11.5	-	-
	국민연금	46.0	29.3	25.0	19.9	18.6
	퇴직연금	9.0	9.0	9.0	9.0	9.0
	합계	85.8	53.6	45.5	29.0	27.6
2070년 (2045년)	기초연금	30.8	15.4	11.5	-	-
	국민연금	46.0	29.3	25.0	19.9	18.6
	퇴직연금	9.0	9.0	9.0	9.0	9.0
	합계	85.8	53.6	45.5	29.0	27.6

주: 1) 체납 및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2) 임금상승률, 투자수익률, 할인율은 3%로, 물가상승률은 2%로 가정함

3) 수급기간은 23년, 2023년 현가로 산출함

한편, 본 절에서는 연금계좌(개인형 IRP+연금저축)에 대한 추가납부로 연금 자산 마련 시 소득대체율을 살펴본다. 연금계좌는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하므로 강제적으로 운영되는 기초, 국민, 퇴직연금과 같이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태를 반영하여 분석한다.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면, 2021년 기준 연금계좌 가입률(납부율)⁴⁸⁾은 14.4%이며, 이들의 연평균 납부액은 320.5만 원이다. 다만, 은퇴 시점까지 가입하여 유지하는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2021년 납부현황을 고려하여 10년, 20년 납부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적립액을 산출하고, 이를 23년 동안 연금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소득대체율을 산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10년(20년) 동안 납입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3.5%(6.9%)로 추정되며, 소득대체율은 3~5천만 원 소득자가 2.4%(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당 소득대체율이 향후에도 추정한 값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면, 위에서 산출한 기초, 국민,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에 합산하여 총소득대체율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 가입률(납부율)이 14.4%라는 점을 유념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IV-5〉 연금계좌의 소득대체율¹⁾

(단위: 만 원, %)

구분		2천만 원 이하	2~3천만 원	3~5천만 원	5~8천만 원	8천만 원 초과	전체
연간 총급여액(A)		983	2,484	3,870	6,287	12,671	4,035
연간 납부액(B)		30.2	86.8	217.4	302.9	410.8	320.5
적립금 ²⁾ (C=B×납부기간)	10년납	302	868	2,174	3,029	4,108	3,205
	20년납	605	1,735	4,348	6,058	8,217	6,409
연간수급액 (D=C/23년)	10년납	13	38	95	132	179	139
	20년납	26	75	189	263	357	279
소득대체율 ³⁾ (R=D/A)	10년납	1.3	1.5	2.4	2.1	1.4	3.5
	20년납	2.7	3.0	4.9	4.2	2.8	6.9

주: 1) 국세통계연보 2021년 기준 활용하여 산출하되 1인 평균으로 산출함

2) 적립금(C)은 '연간납부액(B)×납부연수'로 하여 10년 납부하는 경우와 20년 납부하는 경우로 구분함

3) 연간수급액(D=C/23년)은 적립금(C)을 수급기간(23년)으로 나누어 산출함

4) 소득대체율(R)은 연간수급액(D)을 연간 총급여액(A)으로 나누어 산출함

48) 2021년 기준 1,991만 명이며, 이중 286만 명이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가입자여서 가입율(납부율)은 14.4%임

나. 민감도 분석

현재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노후소득 마련 수단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이며, 연금계좌는 제외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연금계좌(개인형 IRP+연금저축)까지 포함하여 투자수익률, 추가납부율 등을 고려한 총소득대체율 변화를 살펴본다.

1) 투자수익률 변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일반 조세재원, 임금상승률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투자수익률 변화와 무관하다. 여기서는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받는 DC형 퇴직연금 중 사용자 부담금(퇴직급여)과 연금계좌를 중심으로 투자수익률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 변화를 살펴본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의 경우 수익률에 따라서 노후소득대체율이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다. 앞의 기본안 분석에서는 수익률을 3%로 가정하였는데, 수익률이 4%, 5%, 6% 그리고 7%로 증가할 경우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다. 분석대상자는 평균소득자(A값, 268만 원)로 하였다. 추정결과 연평균 자산운용 수익률이 4%로 1%p 증가하면 40년 가입 시에는 소득대체율이 14.4%에서 17.7%로 3.3%p 개선되었고, 25년 가입 시에는 9.0%에서 10.3%로 1.3%p 개선되었다. 따라서 수익률이 1%p 개선될 때마다 40년(25년) 가입 시에는 소득대체율이 3.3%p(1.3%p) 개선되었고, 연평균 자산운용 수익률이 7%가 되면 40년(25년) 가입 시 34.7%(15.4%)의 소득대체율을 퇴직연금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연금계좌를 통해 평균소득자가 추가납부 시 어느 정도의 소득대체율 개선이 발생되는지 살펴본다. 기본안인 수익률 3%인 경우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20년일 때 6.9%, 10년일 때 3.5%로 추정된다. 수익률이 6% 수준으로 개선되고, 연금계좌 가입기간이 20년 정도 되면 평균소득자는 13.3%의 추가적 소득대체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연금계좌는 퇴직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보험료율이 8%(퇴직연금 8.3%), 가입기간이 10년, 20년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표 IV-6〉 DC형 퇴직연금과 연금계좌 투자수익률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 변화

(단위: 년, %)

수익률	퇴직연금		연금계좌	
	가입기간	소득대체율 ¹⁾	가입기간	소득대체율 ²⁾
3% (기본안)	40	14.4	20	6.9
	25	9.0	10	3.5
4%	40	17.7	20	8.5
	25	10.3	10	4.0
5%	40	21.9	20	10.6
	25	11.7	10	4.5
6%	40	27.5	20	13.3
	25	13.4	10	5.2
7%	40	34.7	20	16.7
	25	15.4	10	5.9

주: 1) 기본가정에 따라 퇴직연금은 8.3%, 연금계좌는 8%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되 수익률 3%→7% 상향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추정함

2)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동일하게 산출됨

3) 평균소득자(A값: 268만 원)를 기준으로 추정함

2) 투자수익률과 보험료율(적립률) 변화

현재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적립하는 퇴직연금 보험료율은 연 소득의 8.3%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8.3%로 고정되어 있다. 추가적 보험료 납부는 대부분 본인부담으로 하는데, 2023년부터는 최대 900만 원까지 연금계좌(개인형 IRP+연금저축)에 세제혜택을 받고 노후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연금계좌에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 보험료율⁴⁹⁾과 수익률이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 노후소득대체율 변화를 살펴보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추가 납부자의 경우에 평균 추가 보험료율은 8%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가 납부보험료율 1.7%, 3.7%, 6.7%는 현실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가입기간을 40년 혹은 25년으로 설정할 수 있는냐의 문제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현행 세제혜택 수준이 호주, 스웨덴을 비롯한 OECD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으므로 가입 유인 요소 제고를 위해 세제, 보조금 정책을 통하여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분 8.3%에 연금계좌 등 사적연금을 활용한 추가적인 적

49) 여기서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모두를 보험료라는 명칭으로 통일함

립을 통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보험료율이 15%(추가 보험료율 6.7%) 수준까지 증가할 경우 이들 연금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40년(25년) 가입 시 최대 62.6%(2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보험료율(적립률)과 자산운용수익률에 따른 퇴직 및 연금계좌 소득대체율

(단위: %)

투자수익률	가입기간	보험료율 (8.30%)	퇴직연금+연금계좌 납입률		
			10%	12%	15%
3% (기본안)	40년	14.4	17.4	20.9	26.1
	25년	9.0	10.9	13.0	16.3
4%	40년	17.7	21.3	25.6	32.0
	25년	10.3	12.4	14.8	18.5
5%	40년	21.9	26.4	31.7	39.7
	25년	11.7	14.1	16.9	21.1
6%	40년	27.5	33.1	39.7	49.6
	25년	13.4	16.1	19.4	24.2
7%	40년	34.7	41.8	50.1	62.6
	25년	15.4	18.5	22.2	27.8

주: 1) 추가보험료율은 각각 1.7%, 3.7%, 6.7%로 산출됨

2) 추가보험료는 연금계좌(개인형 IRP+연금저축)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로 정의함

3) 총소득대체율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노후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고려하면 총 노후소득대체율을 얻을 수 있다. 평균소득자의 경우 25년 가입 시 운용수익이 4% 수준이고, 퇴직연금 8.3%와 IRP 추가 적립금 3.7%를 더해 연 소득의 12% 적립하고 연평균 수익률 6%를 달성한다면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으로부터 19.4%의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으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부터 40.6%의 수익률을 얻어 OECD 평균에 근접한 총 60%의 노후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다.

〈표 IV-8〉 평균소득, 25년 가입자의 총 노후소득대체율

(단위: %)

운용수익률		보험료율	퇴직연금 (8.3%)	퇴직연금+연금계좌 납입률		
				10%	12%	15%
기초+연금			40.6	40.6	40.6	40.6
사적연금	3%(기본안)		9.0	10.9	13.0	16.3
	4%		10.3	12.4	14.8	18.5
	5%		11.7	14.1	16.9	21.1
	6%		13.4	16.1	19.4	24.2
	7%		15.4	18.5	22.2	27.8
합계 (기초+국민+사적연금 6%)			54.0	56.7	60.0	64.8

주: 평균소득자 기준임

3. 소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국민연금의 지급 수준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할 때 연금계좌 등 사적연금을 활용해 적립액 수준을 높이고(연소득의 12%),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 없이 은퇴 시까지 유지하며, 적절한 운용지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3%)을 올릴 경우 40년(25년) 가입 시 퇴직연금 및 연금계좌로부터 20%(13%)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여기에 국민연금 40%(25%)와 기초연금을 고려할 경우 OECD 평균에 가까운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약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퇴직연금 및 IRP 등 사적연금으로부터 일정한 노후소득을 조달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음 장에서는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II장에서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공적연금 개혁이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 스웨덴과 호주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V장에서 퇴직·개인연금의 역할강화에 따른 소득보장개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해외사례의 시사점과 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개선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적립금 중도 인출 조건 강화

퇴직연금이 은퇴 후 노후소득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누수 없이 은퇴 시점까지 유지 및 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도 인출이 제한되어야 한다. 먼저 중도 인출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관련 중도 인출의 경우,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받고 다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생애기간 동안 무주택자의 선택과정에서 여러 차례 인출할 수 있다. 주택 임차의 경우에도 중도 인출 횟수 제한이 동일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되어있지만, 이직 후에는 중도 인출이 다시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 매입 혹은 임차라는 목돈이 드는 상황과 느슨한 중도 인출조건으로 인해 주택 관련 중도 인출은 전체 중도 인출 금액의 88.7%(주택매수 65.2% + 주택 임차 23.5%)에 달한다.

따라서 주거 관련 중도 인출은 제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스웨덴 및 호주 등 국가는 물론 여타 선진국에서도 주택 마련을 이유로 노후소득원인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나라는 드물다. 대신 주택 구입 및 임차 관련 규제인 LTV(Loan to Value ratio) 및 DSR(Debt Saving Ratio) 등의 조건에 예외를 들어 적립된 퇴직연금의 일정 수준까지 추가적인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혹은 주택 구입을 허용할 경우 퇴직 후 일정 조건(예: 연금액이 과소한 경우)하에서 주택연금을 활용하도록 제

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자녀와의 갈등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직 시 해지 금지

이직 시 퇴직연금 해지는 적립금 누수 측면에서 중도 인출보다 더 큰 문제이다. 현재 은퇴 연령(55세) 이전 퇴직 시 적립된 퇴직연금 자산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되어 퇴직연금 자산을 연속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퇴직연금 자산이 IRP로 이전된 이후에는 가입자가 임의로 해지 및 인출이 가능하여 한해 10조 원 이상이 퇴직연금으로부터 누수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호주와 스웨덴 사례는 물론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많은 나라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퇴 연령 전 퇴직연금 적립금 인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은퇴 연령(55세) 이전에는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IRP에 있는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인출하지 못하도록 은퇴 연령 전 IRP 해지 및 적립금 인출 금지 조항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재산권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직 시 해지 금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현행 퇴직소득세 공제율을 대폭 줄여 해지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제율 감소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퇴직연금을 종신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현행 4%를 3% 이하 혹은 일정소득 이하에서는 면세해 주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환급형 세제공제 적용

저소득층은 중산층 이상 계층보다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더 크다(정원석·김미화, 2015). 따라서, 소득이 낮은 계층은 사적연금 등 추가적인 노후소득원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득이 낮은 계층의 연금계좌(개인형 IRP+연금저축) 납입률 및 평균 납입액 수준은 낮다. 이는 소득이 낮은 계층은 노후소득을 위해 IRP 등 사적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연금계좌(개인형 IRP+연금

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적연금 납입 유인 요소가 없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가입 유인을 위해 본인기여에 대해 과세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율에 해당하는 만큼 환급(가칭, 환급형 세액공제)을 해 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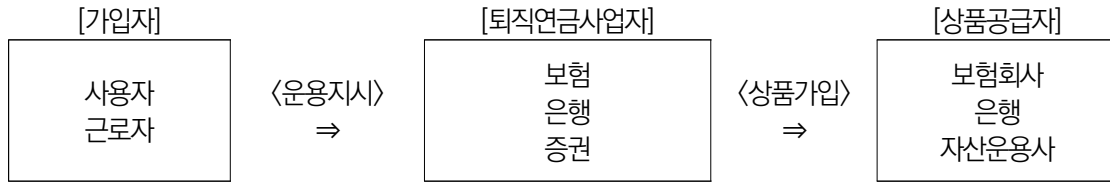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는 저소득층(연 소득 37,000AUD 이하)에 대해 납입액의 15%까지(연간 500AUD 한도)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이와는 별도로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10%(연소득 54,837AUD 미만)에서 최대 50%(연 소득 39,837AUD 미만)의 공동기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퇴직연금 추가 납입을 유인하고 있다. 미국 역시 저축 크레딧(The Saver's Credits)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적연금 납입 유인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사적연금에 대한 납입 유인 요소 제공이 사적연금 적립금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김원식(2016)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재정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투입된 재정의 최대 8배까지 연금자산 적립에 유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원석·강성호(2017b) 역시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 저소득층에 연금저축 납입 유인을 제공해 추가적인 노후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어 빈곤을 완화에 기초연금보다 비용 대비 효과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4. 퇴직연금 사업자 역할 강화

퇴직연금은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그리고 금융상품 공급자 이렇게 3개의 주체에 의해서 운용된다. 가입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된 자산에 대한 운용지시를 내린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적립된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지시에 따라 적립된 자산을 상품공급자가 생산한 보험, 예·적금 및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V-1〉 퇴직연금 자산운용 순서도



보험, 은행, 증권회사 등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되며 이들은 가입자가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 리스트를 제시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상품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보험, 은행, 증권별로 가입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상품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 혹은 사업자의 권역별로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사업자별로 가입한 고객의 특성이 달라서 포트폴리오가 다른 경우 사업자 혹은 권역별로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DB·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으므로 가입 고객의 특성이 사업자에 반영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인형 IRP의 경우 가입자가 사업자를 정할 수 있다. 개인형 IRP에 연금 자산을 적립하는 개인은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등 금융지식이 높고, 소득이 높아 저축여력이 높은 계층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산 포트폴리오 역시 적극적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업권의 위험자산 비율 및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적극적인 자산운용 지시를 내리는 계층이 대거 금융투자업권을 통해 개인형 IRP에 가입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노력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둘째, 퇴직연금 사업자가 우수한 상품으로 퇴직연금 투자상품 리스트를 구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백 개 이상의 상품을 제시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이므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고객의 선택을 돕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아니지만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과학기술인공제의 경우 투자옵션을 검토하여 원리금보장형(4개) 및 실적배당형(펀드 67개, TDF 27개)을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DC형 퇴직연금과 과학기술인연금의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DC형 퇴직연금은 1.88%인데 비해 과학기술인공제의 수익률은 4.0%로 과학기술인연금이 2.1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조건을 통제한 결과가 아니므로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

례라고 볼 수 있다.

2023년 7월부터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10개 이내의 디폴트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상품은 감독당국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업자가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에 따른 수익률 차이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상품 제공 능력의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의 경우 MySuper 상품이 우리나라의 디폴트옵션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은 MySuper 상품 간의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디폴트옵션 인가 과정 등에서 금융상품 제조회사의 경쟁을 유도하고, 가입자가 상품 간 특징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5. 최저보증 상품 활용

가. 퇴직연금

재무이론에 따르면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 비율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높은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스웨덴과 호주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손실 발생이 두렵기 때문(63.9%)이거나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28.8%)으로 응답하였다.⁵⁰⁾ 따라서 가입자가 손실에 대한 걱정을 줄이면서 실적배당형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산운용 시 최저보증옵션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실적배당형 상품에 가입하고 최저보증옵션을 추가로 가입하면 시장수익률이 높은 경우에는 보증 수수료로 인해 수익률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증 수익률을 통해 손실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보증옵션을 추가하면 시장수익률을

50) 한국경제신문(2021. 7. 25), “한경·미래에셋 퇴직연금 설문”

추종하면서도 변동성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감독규정⁵¹⁾에 의해 가입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 등에 가입하더라도 최저보증옵션을 부가한 변액보험 가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변액보험의 큰 장점 중 하나인 최저보증옵션을 활용한 리스크 헷징(hedging)이 불가능하다. 이는 가입자가 보험의 장점을 살려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면서 시장 하락기에는 최저 보증 옵션을 활용한 위험 분산을 통해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할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한한다. 금융당국 역시 최저보증옵션을 활용한 시장수익률 추구하고 위험분산 포트폴리오의 장점을 고려하여 2023년 하반기부터 연금 개시가 시작된 개인형 IRP의 경우 적립금 운용 시 최저보증옵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⁵²⁾ 최근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동성은 가입자가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이 개시된 IRP에 허용된 최저보증옵션을 전체 퇴직연금 계좌를 대상 허용할 필요가 있다.

나. 연금저축

「소득세법」은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을 통칭하여 연금계좌라고 통칭하고 납입액에 대해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두 제도의 실행 상 법적 근거는 서로 다르다. 개인형 IRP는 퇴직연금의 한 형태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규율되는 반면,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 따라 규율된다.⁵³⁾ 따라서 상품에 대한 규제 역시 각각 다른 근거법의 규제를 받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 및 IRP의 경우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의해 변액보험에 가입해도 최저보증옵션에 추가로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연금저축의 근거법인 「소득세법」에서는 연금저축계좌의 구체적인 상품요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각 업권별로 연금저축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 등은 연금저축 상품에 투자신탁 및 EFT 등을 포함하였다. 「보험업감독규정」 역시 연금저축 계좌 설정이 변액보험으로 불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연금저축 계좌를 변액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은 현재 제도하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보험업감독규

51)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3조(운용방법으로서의 보험계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적립금의 반환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어떠한 형태로도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약정할 수 없다.

5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4. 6), “연금저축 현황 분석”

53) 소득세법 제20조의3 등

정」에서는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실적배당형 보험계약에 최저보증옵션을 부가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⁵⁴⁾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에서 규정이 금리연동형 보험계약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명확해진다면 연금저축을 최저보증옵션을 포함한 변액상품으로 설정하여 실적배당형 투자를 통한 수익률 추구하고 위험 헷지(Hedge)가 모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변액보험과 펀드 수수료 비교

변액보험은 금융시장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고, 최저보증수익률 옵션에 가입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높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처럼 정부 정책에 의해 장려되어 세제혜택이 주어지 연금 가입자가 변액보험을 자산운용 수단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사업비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퇴직연금(IRP포함) 및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자 스스로 변액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위해서 발생하는 운용 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그리고 펀드 운용보수로 나눌 수 있다. 펀드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비용이 발생하고, 운용 수수료로 총적립금(Asset Under Management, AUM)의 일정 비율을 매년 수수료로 부과한다.

변액보험의 경우 계약 시 계약체결비용, 계약 유지에 따른 계약관리비용 그리고 변액보험을 통해 가입한 펀드 보수가 적립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발생한다. 공시이율에 따르는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만 발생한다.

연금저축을 변액보험으로 운용하는 경우와 공시이율을 따르는 연금보험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의 총 비용을 추산하였다.

비용 추산을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연금저축 펀드 4개(신탁 2개, TDF 2개)를 선정하고 이들 상품의 실제 수수료를 사용하였다. 신탁상품의 경우 계약체결비용 0.95%를 포함해 매년 부과되는 총 펀드 보수 1.54%, TDF 상품의

54)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경우 총보수 0.85%와 1.27%를 적용하였다. 변액연금의 경우 계약체결비용은 7년간은 월 납보험료의 2.46%, 7~10년간은 월납보험료의 0.56%를 가정하였고, 관리비용은 매월 적립금의 0.02%로 하되 최고 3천 원을 한도로 하였다. 펀드 보수는 글로벌 ETF펀드의 경우 적립금의 0.39%, 해외펀드의 경우 0.66%를 적용하였다. 수수료 구조를 보았을 때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총보수가 전체 적립금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변액연금은 월 납입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가입 초기에는 연금저축 펀드의 비용이 더 적을 것이다. 그러나 적립이 계속되어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펀드의 수수료부담은 증가하고, 사업비 부과가 종료된 변액보험의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V-1〉 연금저축 상품 유형별 비용 구조

구분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변액연금
	A사 투자신탁	B사 투자신탁	C사 TDF	D사 TDF	(신규개발안)
체결비용 (α)	판매보수 0.95%	판매보수 0.95%	판매보수 0.48%	판매보수 0.91%	7년 이내: 보험료의 2.46%/월 7~10년: 보험료의 0.56%/월
관리비용 (β)	-	-	-	-	적립금의 0.02%/월 (최고 3천 원/월 한도)
펀드보수 (매년)	총보수 (TER) 적립금의 1.54%	총보수 (TER) 적립금의 1.54%	총보수 (TER) 적립금의 0.85%	총보수 (TER) 적립금의 1.27%	적립금의 0.39% (글로벌ETF 펀드) 적립금의 0.66% (해외 펀드)

주: 펀드보수: 연금저축펀드(운용보수 + 판매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변액연금저축(운영보수+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이러한 수수료 가정하에서 가입자가 월 30만 원을 20년간 납입하고, 납입기간 이후 10년 거치기간을 두어 총 30년간 가입하며, 모든 상품의 수익률은 연 2.25%로 같다고 가정, 시간별 누적 수수료를 추산하였다.

추산 결과 변액보험을 글로벌 ETF 상품으로 운용할 경우 5년 경과 시 72.5만 원, 글로벌 펀드로 운용할 경우 84.7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한편 신탁의 경우 71.3만 원, TDF는 상품에 따라 39.8만 원 혹은 59.1만이 발생하여 가입기간 5년 이하 경우 신탁이나 TDF 등 펀드 가입 시 수수료가 변액보험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년 가입 시에는 변액보험을 통한 글로벌 ETF 투자의 총 비용이 169.5만 원, TDF C의 총 비용이

161.8만 원으로 비슷해지고, 20년 가입 시에는 변액보험을 글로벌 ETF를 활용해 적립금 운용 시 누적 비용은 445만 원인데 비해, 신탁은 881만 원, TDF의 경우 각각 514만 원과 742만 원으로 변액보험을 활용한 자산운용의 비용이 펀드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 연금저축 상품 유형별 비용 비교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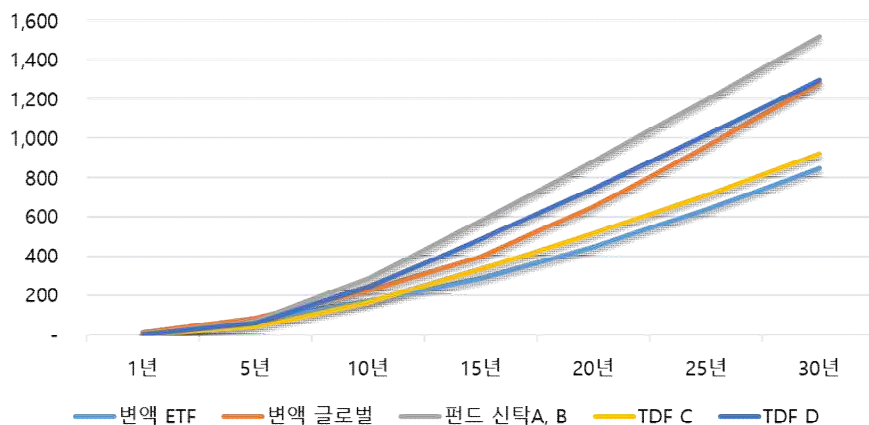
구분	상품	1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연금저축 변액	ETF	99,914	725,166	1,695,949	2,845,031	4,451,560	6,375,233	8,462,778
	글로벌	105,070	847,460	2,191,251	3,982,583	6,517,469	9,546,002	12,800,180
연금저축 펀드	신탁A, B	30,149	713,839	2,864,707	5,788,765	8,814,566	11,945,651	15,185,683
	TDF C	16,676	398,528	1,618,333	3,319,328	5,141,357	7,093,034	9,183,584
	TDF D	24,883	591,318	2,383,954	4,845,307	7,426,962	10,134,799	12,974,985

주: 월납 30만 원, 20년 납, 10년 거치, 수익률 2.25%로 가정함

아래 〈그림 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액ETF(점선) 초기에는 펀드(TDF C)에 비해 높지만 10년 이후부터는 여타 펀드들에 비해 낮아지기 시작하여 변액 EFT의 경우 비교 대상 중 가장 낮았다. 변액글로벌펀드(파선·점선)의 비용선 역시 10년 이후부터는 신탁(A, B) 혹은 TDF D에 비해 낮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2〉 연금저축 상품 유형별 비용 비교

(단위: 만 원)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은퇴 시까지 장기간 가입을 전제로 하는 연금저축의 경우 적절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한 변액보험 활용을 통해 가입자는 금융시장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고, 장기가입 시 여타 펀드에 비해 낮은 수수료를 부담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저 보증 옵션 활용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헷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불과 32년 후인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기금 고갈 이후 제도가 부과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면 근로 세대는 은퇴 세대의 연금지급을 위해 연 소득의 최대 35%를 납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은 근로 세대의 반발로 제도가 존속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공적연금 개혁은 결국 더 내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족해진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사적연금을 활용해 보충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연금계좌가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노후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은퇴 시점에 사적연금 적립금이 충분히 적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적립금이 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연금개혁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사적연금을 활용한 스웨덴과 호주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이들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었다. 첫째, 퇴직연금 혹은 사적연금의 적립금 중도 인출 조건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까다로웠다. 둘째, 사적연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는 계층을 위해 보조금(환급형 세액공제)을 지급하거나 혹은 최저보증 연금 등을 지급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셋째, 금융회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사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우리나라가 사적연금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조건을 강화하고 이직 시 해지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호주나 미국 그리고 독일 등 사례처럼 저소득층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환급형 세액공제) 지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 간의 수익률 비교 및 공시 등을 통해 사업자 간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 등에서 실적배당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저보증 옵션 허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DP)은 32,930달러로 이는 G7 국가인 이탈리아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세계 최고 선진국 수준의 산업경쟁력과 경제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이에 걸맞은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역시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국민의 지혜를 모아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을 활용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호(2023),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시사점」,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강성호·류건식·김동겸(2018),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 강성호·정원석·이상우·이소양(2022),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 김상호(2021), 「기초연금,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7(4), 41-64
- _____(2022),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공적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2022년 공동국제세미나
- 김용하(2015),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예산정책연구』, 제4권 제2호
- 김원섭·강성호·김형수·이용하(2016),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보편적 중층보장체계로의 재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Vol.32 No.4
- 김원식·김재현·김우철·김상봉(2016),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의 정책방향」, 한국연금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 김윤영·김태영·김건호·김재신(2022),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 류건식·강성호·김동겸(2017),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 류재린(2022), 「2000년대 이후의 영국의 연금개혁과 시사점」, 『GLOBAL ISSUE BRIEF』, Vol.0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류재린·정해식·이용하·신화연·이다미·이지혜(2022),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현경(2022),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핀란드 국민연금 개혁」, 『GLOBAL ISSUE BRIEF』, Vol.0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윤정·고든솔·박소은·안수란·우해봉·이원진·이다미·장인수·정연·이지혜·임지혜·계
봉오·전광희·윤홍식(2021),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석재은(2018), 「지속가능한 노인 기본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 방안:
세대 간 불공평 및 세대 내 불평등 개선」, 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성혜영·유호선·김형수·문현경·유현경(2020),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송지원(2017), 「2018년 예산안에 나타난 스웨덴 정부의 사회복지 개혁 방향」, 보건사회연구원

송홍선(2022), 「소득대체율 상향을 위한 다층연금개혁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오건호(2021), 「한국 노후소득보장의 재구조화 연구: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중심으로」,
제28권 제4호, 한국사회정책학회

유호선(2022),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전문가포럼

유호선·김혜진·문현경(2021),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유형화 연구-적정성과 재정적 지
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윤석명·신화연·류재린·이병재·한수진(2022),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
도개혁 방안 모색」,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희숙·김도형·김종훈(2015),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KDI

이경희(2018),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이미연(2021),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스웨덴편」, 『추계&세제 이슈』, 제16호, 국
회입법조사처

전영준(2020),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편 방향」, 한국경제포럼

정원석(2018a), 「저소득층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적용 효과 분석」, 『재
정학연구』, 제11권 제3호, pp. 117-141

_____(2018b), 「연금저축 세제혜택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행태 변화 분
석」, 『보험금융연구』, 보험연구원

_____(2022), 「세제변화에 따른 연금저축과 IRP 납입행태 분석」, 『보험금융연구』, 보험연구원

정원석·강성호(2015), 「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8권 제2호, pp. 113-141, 보험연구원

- _____ (2017a),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상향에 따른 사적연금 추가가입 유인추정」, 『재정학연구』, 제10권 제1호, pp. 215-240, 보험연구원
- _____ (2017b), 「사적연금 보조금 지급 정책 도입 시 빈곤완화와 재정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10권 제4호, pp. 105-142, 보험연구원
- 정원석·김미화(2014),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방안」, 『조사자료집』, 보험연구원
- 정원석·문성훈(2016),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 사적연금 가입행태 변화」, 『세무와 회계저널』, 제17권 4호, 한국세무학회
- 정창률(2022), 「성공적인 연금개혁 실현을 위한 전제와 방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정해식·최옥금·권혁진(2020),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방안 연구: 제도 간 연계·조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기홍·한정림(2017),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수익성 측정」, 『통계연구』, 제22권 1호, pp. 44-64, 통계청
- 최병호·강성호(2019),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재정정책논집』, 21(4), pp. 141-177, 한국재정정책학회
- 최옥금(202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과 발전 방향」, 국민연금연구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통계

국민연금연구원(2012), 스웨덴의 연금제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금융감독원, 호주 퇴직연금 제도 및 감독체계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통계청, 퇴직연금 통계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Eknews, 스웨덴, 연금 제도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ASFA(2021), “Developments in the number and cost of multiple superannuation accounts”

Budget.gov.au, “Portfolio Budget Statements 2021-22 Budget Related Paper No. 1. 13”

Department of Treasury(2020), Retirement Income Review Final Report

Edward Palmer(2003), “The Swedish Pension Reform Model: Framework and Issues”,
OECD

European Commission(2019), “1 in 7 pensioners at risk of poverty in the EU”,
EUROSTAT

_____ (2020), “The Swedish pension system and pension projections
until 2070”

Firstlinks(2019), “How much can retirees spend and not run out of money?”

Hagen, Johannes(2013), “A History of the Swedish Pension System,” Working Paper
Series, Center for Fiscal Studies 2013:7, Uppsala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Klevmarken, N. Anders(2002), “Swedish Pension Reforms in the 1990s,” Working Paper
OECD(2017), “Long-term projections of public pension expenditure”, in Pensions at a
Glance 2017: OECD and G20 Indicators

PENSIONS MYNDIGHETEN(2023), “Riktåldern styr när du kan ta ut allmän pension”
Series(2002), Uppsala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Sweden government(2000), Sweden Social Insurance 2000

_____ (2022), Orange Report 2022

Mercer, “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2022 calls for a shift in super
mindset”

Parliament of Australia, “Superannuation after 30 years”

moneysmart, “Getting your super”
SuperGuide, “Superannuation Guarantee contributions rate and rules”
OECD, pension at a glance, each year
Swedish Pension Agency, statistics database
The Conversation, “Super co-contribution has cost \$10 billion to help the wrong
Australians – so let’s scrap it”
The Treasury, MySuper working group, “Defining MySuper”
Way forward, “Withdrawing super to pay debt: What you should know”
APRA(호주 건설통계감독청)(<https://www.apra.gov.au/>)
ATO(호주 국세청)(<https://www.ato.gov.au/>)
Australian Government(호주 정부)(<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
Bendigo Superannuation([https://www.bendigosuperannuation.com.au/siteassets/
dashboard/mysuper-product-
dashboard-bgif.pdf](https://www.bendigosuperannuation.com.au/siteassets/dashboard/mysuper-product-dashboard-bgif.pdf))
OECD Library([https://www.oecd-ilibrary.org/sites/d76e4fad-en/index.html?itemId=
content/
component/
d76e4fad-en](https://www.oecd-ilibrary.org/sites/d76e4fad-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d76e4fad-en))
Parliament of Australia([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
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BriefingBook47p/Superannuation](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BriefingBook47p/Superannuation))
Sweden AP1(<https://www.ap1.se/>)
Sweden AP2(<https://www.ap2.se/>)
Sweden AP3(<https://www.ap3.se/>)
Sweden AP4(<https://www.ap4.se/>)
Sweden AP6(<https://www.ap6.se/>)
Sweden AP7(<https://www.ap7.se/>)
Way forward([https://wayforward.org.au/debt-information/withdrawing-super-to-
pay-debt-faq/](https://wayforward.org.au/debt-information/withdrawing-super-to-pay-debt-faq/))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 저자약력

정원석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originalstone@kiri.or.kr

강성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ksh0515@kiri.or.kr

이소양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 연구원
E-mail : lishaoyang@kiri.or.kr

전예지 한양대학교 석사 / 연구원
E-mail : yezi9181@naver.com

연구보고서 2023-12

공적연금 개혁기 사적연금의 활성화 방안

발행일 2023년 9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고려씨엔피

ISBN 979-11-93021-24-8
979-11-85691-50-3(세트)

(정가 10,000원)